NABO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2016. 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 7. 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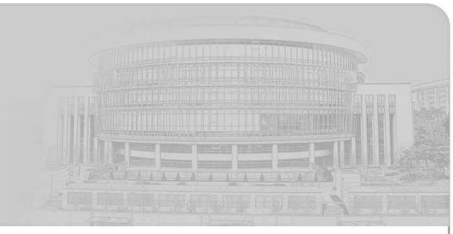

예산 과정에서 결산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점검하는 출발점이며, 그 결과를 예산심사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제20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담았습니다.

첫째, 위원회별 '주요 현안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 보고서와의 차별을 위해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을 지양하고, 거시·통합적 분석과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분석 주제 선정의 타당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연초 3개월 동안 예산분석실 분석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분석 주제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들과 토론을 거쳐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3회에 걸친 내부 심의회와 전직 차관급 공무원·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에게 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결산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을 위한 기관입니다.

201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차 례

CONTENTS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Ⅰ. 결산 개요 / 3

1. 현 황 ····· 3
2. 주요 사업체계 ····· 6
3. 「201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8

Ⅱ. 주요 현안 분석 / 10

1. 기획재정부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공통) ····· 10
   1-1. 예비비 편성요건과 정부 입법 홍보비 편성 ····· 11
   1-2. 예비비를 통한 조직 신설 예산 편성의 문제점 ····· 13
   1-3.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 ····· 15
2. 기금평가제도의 개선과제(재정관리국) ····· 18
3. 국제부담금 집행 시 환차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공통) ····· 22
4.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해외 M&A 대출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외국환평형기금) 25
5. 대통령 자문기구 운영의 개선과제(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청년위원회) ····· 28
   5-1.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사업의 문제점 ····· 28
   5-2. 자문기능에 충실한 청년위원회 운영 필요 ····· 30
6.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체계 및 성과관리의 개선과제(국유재산관리기금) ····· 32
7. 법정배분제도 개편 검토 필요(복권기금)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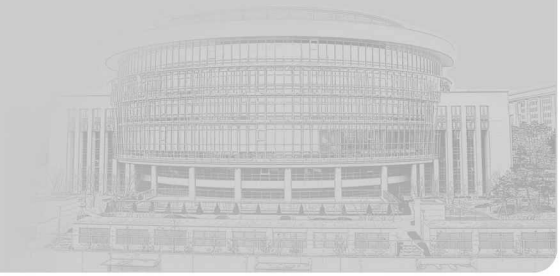

8.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원구조 개선과제(대외경제협력기금) ····· 39
9. 융자계정 정리 필요성 검토(공공자금관리기금) ····· 41
10.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즉시 시행에 따른 예산과 집행 간 괴리(예산실) ····· 44
11. 개별법에 근거한 국유재산특례 현황 조사 및 관리 필요(국유재산관리기금) ····· 46

Ⅲ. 개별 사업 분석 / 48

1.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의 준비 및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대외경제협력기금) ··· 48
2. 사업수요 부족에 따른 민간협력차관 전액 불용(대외경제협력기금) ····· 50
3. 추경 편성 시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대외경제국) ····· 52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상 문제점(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 ····· 55
5.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금관리비 부담 전가의 문제점(대외경제협력기금) ····· 58
6. 기준환율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 및 집행(국제금융협력국) ····· 61
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 집행 상 문제점(재정기획국) ····· 62
8.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사업명 및 소관 프로그램 변경 필요(복권기금) ····· 64

[국 세 청]

Ⅰ. 결산 개요 / 69

1. 현 황 ····· 69
2. 주요 사업체계 ····· 70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71

CONTENTS

Ⅱ. 주요 현안 분석 / 72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심사정책국) ····· 72
2. 가산금, 과태료 등 수입 실적 제고 필요(징세법무국) ····· 75

Ⅲ. 개별 사업 분석 / 77

1. 압류재산공매 적정 예산편성 및 비목 변경 필요(징세법무국) ····· 77
2. 조세박물관 이전 비용에 대한 집행 관리 개선 필요(징세법무국) ····· 79
3. 탈세제보포상금 등의 제도개선 필요(조사국) ····· 81

[관 세 청]

Ⅰ. 결산 개요 / 85

1. 현　황 ····· 85
2. 주요 사업체계 ····· 86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87

Ⅱ. 주요 현안 분석 / 88

1. 수출입통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통관지원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 88
   1-1.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통관지원국) ····· 89
   1-2. FTA 이행지원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 사업 역할 분담 필요(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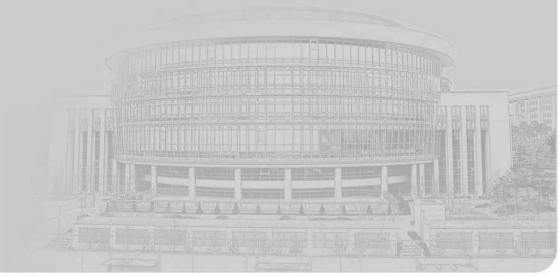

Ⅲ. 개별 사업 분석 / 94

1. 기계기구매각대 과다 세입계상 시정 필요(심사정책국) ····· 94
2. 관세소송비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기획조정관) ····· 95
3. 밀수단속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필요(조사감시국) ····· 97
4. 국제협력 사업 관리 강화 필요(정보협력국) ····· 99
5. 면세점 대상 선정 및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검토 필요(통관지원국) ····· 101

[조 달 청]

Ⅰ. 결산 개요 / 107

1. 현　황 ····· 107
2. 주요 사업체계 ····· 109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110

Ⅱ. 개별 사업 분석 / 111

1.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필요(기획조정관) ····· 111
2.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비축물자 확보 방안 필요(국제물자국) ····· 113
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 방식 개선 필요(시설사업국) ····· 115

CONTENTS

[통 계 청]

Ⅰ. 결산 개요 / 119

1. 현　황 ····· 119
2. 주요 사업체계 ····· 120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 121

Ⅱ. 주요 현안 분석 / 122

1. 통계조사작성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공통) ····· 122

Ⅲ. 개별 사업 분석 / 125

1.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는 수입대체경비 시정 필요(운영지원과) ····· 125
2.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통계교육원) ····· 128

기획재정부

Ⅰ 결산 개요

1 현 황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와 6개 기금(① 공공자금관리기금, ② 대외경제협력기금, ③ 복권기금, ④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⑤ 외국환평형기금, ⑥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수입 결산액은 총 538조 637억원으로 추경예산액 502조 4,893억원 대비 107.1%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은 각각 31조 6,330억원 및 2조 3,320억원이다.

[표 1]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수입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A)					
예 산	259,282,344	263,254,863	295,885,089	265,656,892	27,896,231	2,331,966	100.9
- 일반회계	249,661,403	253,550,274	285,407,777	255,179,580	27,896,231	2,331,966	100.6
- 지역발전특별회계	9,620,941	9,704,589	10,477,312	10,477,312	-	-	108.0
기 금	229,738,946	239,234,459	611,340,563	272,406,795 (607,603,814)	3,736,748	-	254.0
- 공공자금관리기금	156,306,743	165,642,332	252,810,927	163,177,383 (249,075,283)	3,735,645	-	150.4
- 대외경제협력기금	923,591	923,591	1,936,427	939,272 (1,936,427)	1,104	-	209.7
- 복권기금	4,482,405	4,642,329	4,519,554	4,518,451 (4,518,451)	-	-	97.3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36,840	336,840	466,352	466,352 (466,352)	-	-	138.4
- 외국환평형기금	66,557,359	66,557,359	348,704,465	101,928,217 (348,704,465)	-	-	523.9
- 국유재산관리기금	1,132,008	1,132,008	2,902,837	1,377,122 (2,902,837)	-	-	256.4
총 계	489,021,290	502,489,322	907,225,652	538,063,687 (873,260,706)	31,632,979	2,331,966	107.1

주: 괄호 안은 기금 여유자금 수납건별 수납액을 합계한 액수
자료: 기획재정부

심지헌 예산분석관(sjh0125@assembly.go.kr, 788-4625)

총계 기준 세출·지출 결산액은 총 287조 61억원으로 예산현액 255조 5,936억원 대비 112.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841억원과 불용액 5조 9,484억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표 2]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지출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예 산	17,003,214	17,333,890	16,120,034	14,599,279	13,572	1,507,183	90.6
- 일반회계	17,003,214	17,333,890	16,120,034	14,599,279	13,572	1,507,183	90.6
기 금	229,738,946	239,234,459	239,473,587	272,406,795	270,495	4,441,207	113.8
- 공공자금관리기금	156,306,743	165,642,332	165,642,332	163,177,383	-	3,195,555	98.5
- 대외경제협력기금	923,591	923,591	926,839	939,272	2,662	109,648	101.3
- 복권기금	4,482,405	4,642,329	4,642,391	4,518,451	-	28,764	97.3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36,840	336,840	336,840	466,352	-	17,288	138.4
- 외국환평형기금	66,557,359	66,557,359	66,557,359	101,928,217	-	981,094	153.1
- 국유재산관리기금	1,132,008	1,132,008	1,367,827	1,377,122	267,833	108,857	100.7
총 계	246,742,160	256,568,349	255,593,621	287,006,074	284,067	5,948,390	112.3

자료: 기획재정부

총지출 기준 결산액은 18조 3,898억원으로 일반회계 9,94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3조 2,632억원, 복권기금 2조 5,391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7,56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8,374억원이다.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4 결산 (A)	2015 예산		2015 결산 (B)	증 감	
		본예산	추경예산		B-A	(B-A)/A
일반회계	1,004,505	3,706,258	3,706,258	994,133	-10,372	-1.0
공공자금관리기금	11,203,517	14,948,585	15,028,581	13,263,222	2,059,705	18.4
복권기금	2,454,410	2,462,942	2,566,383	2,539,089	84,679	3.5
대외경제협력기금	648,154	864,645	864,645	755,980	107,826	16.6
국유재산관리기금	842,495	978,264	978,264	837,393	-5,102	-0.6
합 계	16,153,080	22,960,694	23,144,131	18,389,818	2,236,738	13.8

자료: 기획재정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와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각각 3조 32억원 및 7,664억원을 전출하였고, 계정성 기금인 공공자금관리

기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예탁·예수를 실시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타 부처 기금에 대하여 1조원 1,978억원을 전출하였다.

[그림 1]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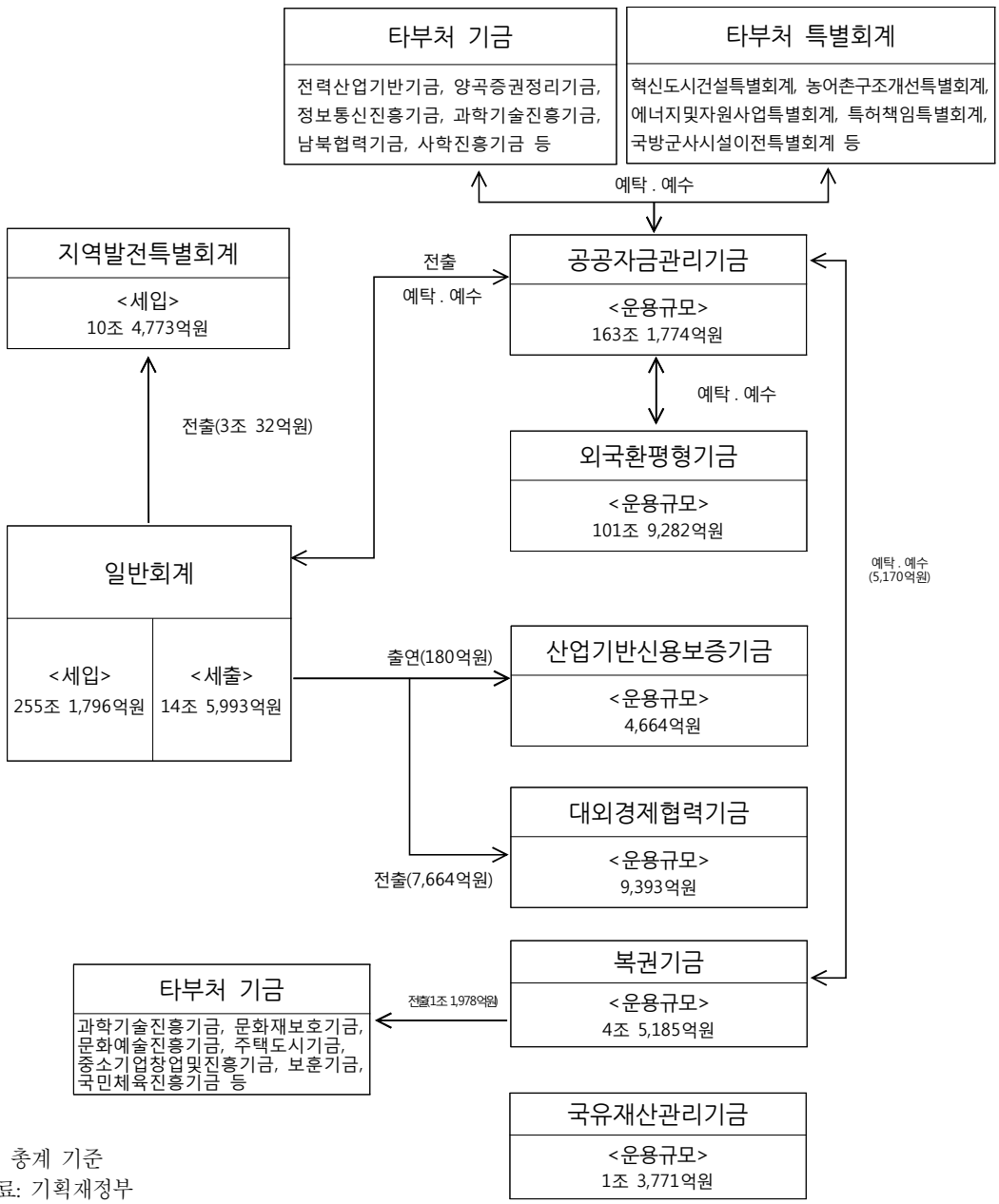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 주요 사업체계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세출(지출)예산은 총 256조 5,683억원이며 12개 분야, 28개 부문, 71개 프로그램, 155개 단위사업, 3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기획재정부의 분야·부문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공공자금관리	차입이자상환 등 2개	국고채이자상환(18조 9,529억원) 등 4개
		경제정책	소비자물가관리 등 4개	소비자물가관리(11억원) 등 4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위원회 운영(49억)
		정책조정	경제정책조정지원	협동조합활성화사업(36억) 등 2개
		자문회의 지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22억원)
		조세정책	조세정책지원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19억원) 등 7개
		국고관리	국유재산관리 등 4개	국유재산관리(35억원) 등 6개
		재정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등 5개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10억원) 등 7개
		공공정책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49억원)
		재정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등 7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174억원) 등 11개
		재정기획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예비비 8억원) 등 2개
		국제금융	국제금융기구출연 등 5개	국제금융기구출연(1,075억원) 등 11개
		경제협력	한국수출입은행출자 등 4개	한국수출입은행출자(1,150억원) 등 10개
		복권기금운영(일반)	복권판매사업 등 3개	복권사업비(2조1,310억원) 등 3개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한국은행예치(12조782억원) 등 17개
		차입금원금상환	국고채원금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개	국고채원금상환(62조9,440억원) 등 4개
		기획재정행정지원	기획재정 정책지원 등 4개	정책연구개발(23억원) 등 9개
	지방행정·재정지원	공공자금관리	국공채 인수	지방채 인수(1조4,881억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공공자금관리	국공채 인수	지방교육채 인수(1조8,594억원)
교통및 물류	물류 등 기타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180억원)
			사회기반시설보증 대위변제	SOC보증대위변제(156억원) 등 3개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영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1,720억원) 등 4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3조1,564억원)
외교통일	외교·통상	대외경제협력 지원	대개도국차관 등 6개	동아시아차관(3,497억원) 등 17개

주: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수 부처의 공용재산취득사업으로 구성되어 9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나 위 표에서는 제외함

자료: 기획재정부

3 「201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총괄계정), ② 예비비, ③ 국제금융기구출연 사업** 등이 있다.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은 국고채 발행금리를 과다계상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2,917억원이 감액(8조 9,994억원→8조 7,077억원)되었고, 예비비는 연례적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5,000억원이 감액(3조원→2조 5,000억원)되었으며, 국제금융기구출연은 출연대상과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예비재원 규모가 과다하여 23억원 감액(1,098억원→1,075억원)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사업, ②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 등이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은 BPR 및 ISP 수행을 위한 예산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1]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2]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3]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통화금융기관예치(외국환평형기금), ②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등이 있다. 통화금융기관예치는 「외화대출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4]」,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은 「근거법률인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하지 아니할 것[5]」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2)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Ⅰ」, 2014.10.

3)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1.

4)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14.1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출자 사업**이 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출자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일부 항목의 경우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6]

이하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① 국제금융기구출연 사업, ②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사업** 등을 비롯하여 **③ 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분석한다.

5) 국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4.12.

6) 한국수출입은행출자: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5.7.

II 주요 현안 분석

1 기획재정부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공통)

2015년도 기획재정부 예비비 편성액은 총 4,662억 8,600만원으로, 이 중 4,579억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3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대부분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목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었고, 그 밖의 예비비는 주로 연내 조직이 신설되면서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정부 입법 홍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2015년도 기획재정부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표 1] 2015년도 기획재정부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자금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463,200	455,200	1.29.	-	8,000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보조망구축추진단)	23	15	11.3.	-	8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보조망구축추진단)	121	117	11.3.	-	5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재정기획국)	172	110	3.12.	-	62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재정기획국)	229	205	3.12.	-	24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예산실)	32	25	3.12.	-	7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753	581	3.12.	20	152
재정건전성관리강화	235	143	3.12.	-	92
재정운용 협의기반 구축·운영	198	198	3.12.	-	-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1,120	1,119	12.17.	-	1
조세협력강화	203	196	10.15.	-	7
합 계	466,286	457,906	-	20	8,359

자료: 기획재정부

1-1. 예비비 편성요건과 정부 입법 홍보비 편성

가. 현 황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국제포럼·글로벌 산업경제정책협력지원 등 위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8억 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 및 예비비 11억 2,000만원 편성으로 예산현액은 19억 6,1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18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고 8,500만원이 불용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11억 2,000만원의 예비비를 지면광고·옥외광고·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홍보비로 편성하여 이 중 11억 1,931만원을 집행하였다.

[표 2] 2015년도 경제정책조정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제정책조정	261	261	-	-20	1,120	1,361	1,342	-	19
서비스산업선진화	350	350	-	-	-	350	305	-	45
글로벌산업경제포럼	150	150	-	-	-	150	136	-	14
경제정책개발	40	40	40	20	-	100	93	-	7
합 계	801	801	40	-	1,120	1,961	1,876	-	85

자료: 기획재정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획재정부는 정부 입법을 위한 대국민 홍보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비비 편성을 위해서는 ①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여야 하고(예측불가능성), ② 다음 연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시급성), ③ 예비비 편성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불가피성), ④ 이·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보충성) 편성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내 법률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 해소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생적 변수이고, 입법 실패 시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급히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홍보예산 규모가 상당하여 이·전용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예측불가능성·시급성·보충성의 예비비 편성요건을 만족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안 처리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인 입법과정의 본질적인 성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시급한 제정 필요성은 국회 내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의 입법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은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1-2. 예비비를 통한 조직 신설 예산 편성의 문제점

가. 현 황

조직 신설을 이유로 2015년 중 예비비가 편성·집행된 세부사업은 총 9개로, 19억 6,600만원이 배정되어 15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다. 신설된 조직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재정기획국, 안전예산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등 4개이다.

[표 3] 조직 신설 목적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지출액	신설조직	배정일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보조망구축추진단)	23	15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 (2015.10.1. 신설)	11.3.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보조망구축추진단)	121	117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재정기획국)	172	110	재정기획국 (2014.12.30. 신설)	3.12.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재정기획국)	229	205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753	581		
재정건전성관리강화	235	143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예산실)	32	25	안전예산과 (2014.12.20. 신설)	3.12.
재정운용 협의기반 구축·운영	198	198		
조세협력강화	203	196	역외소득·재산자진 신고기획단 (2015.9.17. 신설)	10.15.
합 계	1,966	1,590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작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직 신설 여부는 중장기 조직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나, 기획재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조직 신설 예산을 충당하였다.

조직의 신설은 중장기 조직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설에 필요한 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 2개, 2015년 중 2개의 조직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015년 중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예비비는 연중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2017.10.31.)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2016.12.31.)은 한시조직이고, 안전예산과 신설에는 세월호참사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재정기획국을 신설하는데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조직 신설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① 정부 내 조직 신설은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획재정부가 신설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② 조직 신설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 내 조직 신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준비되어 예산안 편성과 연계된다. 재정기획국의 신설이 준비가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신설 결정이 연말에 이루어져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를 통한 조직 신설은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1-3.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

가. 현 황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하여 출연을 실시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 1,074억 8,200만원 중 974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0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다.

동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일반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100억원)은 출연대상 및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내역사업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은 2015년 100억원이 신규편성되어 전액 불용되었다.

[표 4] 2015년도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 내역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출연대상	출연목적	계획액	집행액
세계은행(WB)	빈곤감축 사회개발기금	2,060	2,060
	녹색성장기금	10,300	10,300
	한-WB협력기금	35,535	40,296
	농업식량안보기금	15,450	15,340
	JPO파견	309	312
아시아개발은행(ADB)	e-Asia지식협력 기금	8,240	1,407
	출자증권 현금화	1,898	1,89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7,210	8,260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기술자문협력기금	3,090	3,555
	초기체제전환국지원	1,030	1,030
미주개발은행(IDB)	재정혁신협력기금	8,240	8,240
국제통화기금	한-IMF협력기금	4,120	4,740
일반국제금융기구 출연(대상·목적 미정)		**10,000**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작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반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예비재원은 수요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하였다.

「국가재정법」제22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편성된 예비비는 동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계획명세서 작성, 사용명세서 작성,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감사원 제출,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이처럼 「국가재정법」에 예비비 편성근거 및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인정하되, 과도한 정부 재량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적 제한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일반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은 사용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비비와 성격이 동일하다. 따라서 지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비로 편성·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예비비 지출 시 요구되는 절차를 우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할 경우, 예비비 사용계획서 작성·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긴급한 글로벌 이슈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1) 「국가재정법」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구호·재난을 위한 모든 예비비는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재정법」이 예비비 편성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위한 예비재원 편성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심의 시 국회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동 사업예산의 집행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법률에 따른 국회의 의결은 출연대상 국제기구·출연목적·출연규모 등이 특정되어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정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비 성격을 지닌 예산에 대한 총액 규모의 의결이 동 법률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예산안 편성지침에 규정된 국제부담금 편성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제부담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은 출연 대상 국제기구가 결정되지 않아 협정서가 없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산안 편성지침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긴급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부담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는 예비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2 기금평가제도의 개선과제(재정관리국)

가. 현 황

기획재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매년 정부 기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금평가는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로 분류된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사업운영평가)와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자산운용평가)로 구분되며,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사업의 적정성·재원구조의 적정성·기금존치의 타당성을 평가한다.[1)]

기금평가는 「기금 및 부담금 평가」사업 예산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며, 2015년에는 예산 3억 2,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금평가제도는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기제로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운영 상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중기가용자산평가 결과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존치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기가용자산평가는 기금존치평가 내 '재원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서 기금 자산(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중기가용자산평가 결과 '과다'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통해 과도한 여유재원 해소 요구를 받게 되고, '과소' 판정을 받을 경우 수입재원 확충·사업규모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받게 된다. 기금존치평가의 권고는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되므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는 중기가용자산평가의 결과(과다·적정·과소)만이 제시될 뿐,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기금의 중기가용자산

1) 사업운영평가는 정부가 실시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중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기금운용평가단은 자산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만을 수행한다.

이 과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 예탁을 권고하는 경우, 과다판정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적정규모 대비 과다한 수준 등의 정보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기가용자산평가가 합리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고,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중기가용자산평가 결과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경우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둘째, 자산운용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일정 비율의 하위 기금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평가는 기금별 자산운용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고, 운용성과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평가는 [표 1]과 같이 자산운용의 실적 수치 및 상대평가 등급만을 표로 제시할 뿐, 운용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경우에도 별도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자산운용평가 시 성과미흡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이유는 평가를 위한 시간과 인력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는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 측에 민간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층진단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직접 방문 정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2)]

이러한 개선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심층진단 및 컨설팅·정밀실사를 실시할 대상선별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3)], 기금의 규모·성과미흡의 반복 여부·실적 부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심사 기준을 확립하고, 최소한 성과가 미흡한 일정비율의 하위 기금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pp.8~9.

3) 심층진단 및 컨설팅 대상기금은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방문 정밀실사 대상은 "최하위기금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1] 기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사례(국유재산기금)

평 가 지 표	배 점	지표값	등 급
(3) 자산운용실적(성과)	50.0		미 흡
1. 단기자산의 수익률 및 적정유동성	35W		보통
①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7WA	1.73%	우수
② 유동성자금 운용수익률	7WB	2.16%	보통
③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20WA	0.10%	우수
④ 유동성자금 상대수익률	20WB	-0.11%	아주미흡
⑤ 현금성자금 보유도	8W	2.68	미흡
2. 중장기자산 운용수익률	35(1-W)		미흡
① 과거 3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	10(1-W)	2.10%	아주미흡
② 상대수익률	25(1-W)	0.52%	양호
(이하 생략)			

주: WA는 현금성 자금 비중, WB는 유동성자금 비중, W는 단기자산 비중(W=WA+WB)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2016.5.)

셋째, 개별 기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운용성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기금투자풀이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당초 연기금투자풀 도입 시에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목적 외에 소규모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MMF 등 단기자산은 20여 개 기금 여유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중장기자산의 경우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지 않고 기금별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타 기금 여유자금과 통합하여 운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전 정부 차원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총액의 운용성과는 공개되고 있으나[5],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서 별도로 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성과는 별도 관리

4)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5) 전 정부 차원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총액의 운용성과는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nvestpool.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개별 기금이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한 자산운용성과는 별도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개별 기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운용성과가 기금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6]

따라서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 기금과 통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단독기금이 수익자로 설정된 통합펀드가 증가하는 것은 통합운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수익률 제고라는 연기금 투자풀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단독 기금이 수익자로 설정된 통합펀드를 다수 기금이 참여하는 통합펀드로 개편하는 등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2011~2014년 기금별 중장기자산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운용과 직접운용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남북협력기금·국제교류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은 연기금투자풀 위탁운용의 성과가 직접운용 성과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예산정책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2015., pp.66~67.

3 국제부담금 집행 시 환차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공통)

가. 현 황

국제부담금이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분담금·회의 및 부대경비를 의미한다. 2015년도 기획재정부의 국제부담금 예산은 「국제금융기구출연」 등 8개 세부사업에 1,235억원이 편성되어 1,132억원이 집행되었다.

[표 1] 2015년도 기획재정부 국제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5 예산	2015 결산	대상기관 및 부담금
국제조세기구 분담금	585	537	WCO, OECD
국제재정협력강화	581	562	UNESCO($ 280,000)
ASEAN+3 금융협력 사업	1,070	1,070	ASEAN+3 재무장관회의 활성화 부담금(23백만원) AMRO 운영부담금(1,167백만원) AMRO TA 지원금(114백만원)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	11,770	11,762	GCF(1,100만불)
국제금융기구출연	107,482	97,438	IMF(한-IMF 기술협력기금) 47억원 WB(녹색성장기기금 등) 683억원 ADB(e-아시아및지식협력기금) 14억원 AfDB(한아프리카 경제혁력신탁기금) 83억원 EBRD(기술자문협력기금 등) 46억원 IDB(재정혁신기금) 83억원
경제협력기구활동	400	166	GTI부담금:$152,500 UNCTAD·UNESCAP: $37,500
한-UNDP신탁기금 출연	618	677	UNDP신탁기금: $600,0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1,000	1,000	OECD(1,000백만원)
합 계	123,506	113,212	

자료: 기획재정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규모 국제부담금은 납부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제부담금은 국제기구와의 협약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전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납부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구체적인 납부시기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그런데 국제부담금 예산은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편성되는 반면에 부담금은 외화로 납부해야 하므로, 국제부담금 집행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한다. 특히 부담금 규모가 클수록 대규모 환차손 발생 위험도 크다.

따라서 국제부담금 집행 시에는 환율 변동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환차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납부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의 국제부담금 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각 부처의 개별 사업부서에서 재량적으로 납부시기를 결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환차손 예방을 위한 절차적 규정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기획재정부의 대표적인 국제부담금 납부사업인 「국제금융기구출연」사업의 국제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환율이 고점에 이른 연말에 부담을 납부하여 환차손이 크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환율변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나,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절차적 통제장치를 두어 환차손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2] 국제금융기구출연 사업의 2015년 부담금 납부현황(달러화 납부 부담금)

(단위: 원/$)

대상기구 및 부담금	계획액($)	평균환율	집행환율	집행일시
(WB) 한-WB협력기금	3,500만	1,131	1,168	08.03.
(WB) 농업식량안보기금	1,500만		1,180	12.17.
(WB) JPO파견	30만		1,142	10.30.
(ADB) e-Asia지식협력 기금	800만		1,172	12.30.
(AfDB)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700만		1,180	12.17.
(EBRD) 기술자문협력기금	3,500만		1,185	12.15.
(IMF) 한-IMF협력기금	400만		1,185	12.15.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환전 제도를 통해 고정환율로 환전을 실시하고 있어 외견상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1] 그러나 실제 환율이 고정환율에 비해 높은 경우 발생한 환차손은 외국환평형기금이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외교부가 환차손 위험에서 벗어남에 따라 국제부담금 납부 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차손을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전해주지 않고 외교부가 직접 부담하던 과거에는 국제부담금 납부 시 환율 변동 추이를 보아가며 최적의 시기를 모색할 유인이 있었다. 그러나 환위험이 제거됨에 따라 환차손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율 변동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국제부담금 집행 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환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부담금 납부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환위험 발생의 확률을 감소시키고 환차손 발생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부담금을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의 전문성 있는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환위험 예방확률을 높이고 국제부담금 집행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외교부는 2015년도 기준환율 1,030원/$을 고정환율로 적용하여 원화예산을 외평기금의 달러화로 환전하고 국제기구분담금을 납부하였다.

4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해외 M&A 대출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 (외국환평형기금)

가. 현 황

외국환평형기금은 2015년 9월 10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2조원 규모의 「해외 M&A 대출」사업을 신규추진하였다. 대출재원은 한국은행예치금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한국은행 예치금을 1.2조원 감액조정하고 통화금융기관 예치항목을 1.2조원 증액하였다. 동 사업은 국내기업의 해외 M&A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50억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이나 2016년 6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환평형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해외 M&A 대출 사업 추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해외 M&A를 위한 외화자금 대출 수요 예측이 미흡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한 1.2조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이유로 우리기업의 전반적 해외 M&A 투자수요가 감소하였고, 해외 M&A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최종 실행 시까지 장기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대출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연중에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기금운용계획변경에도 불구하고 연중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M&A 대출 사업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사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중 계획변경을 통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수요예측 및 사업설계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실시한 후 본예산에 편성되어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2015년 9월 해외 M&A 대출 사업 외에도, 2014년 4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총액한도 $150억 규모의 외화대출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1] 지금까지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사업은 모두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었으며, 사전에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외화대출 사업은 여유자금 운용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유자금 항목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편성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에는 국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2]

그러나 외화대출 사업은 규모가 각각 $150억 및 $50억으로 대규모이고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 대출사업 추진에 대한 국회 사전심의를 위해서는 우선 외화대출 사업을 여유자금 운용 항목이 아닌 별도 재정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소극적 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률(20%) 범위 내 기금운용계획변경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액 한도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률 단위로

---

1) 외화대출 사업은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풍부한 국내 외화유동성을 설비투자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해외 PF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2016년 5월 현재 총액 한도 $150억 중 $146.1억이 대출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후략)

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한도를 규정하는 경우 규모가 큰 기금이 국회동의 없이 대규모 자체 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3] 특히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권한을 전적으로 행정부 재량에 위임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개정법」 개정을 통하여 자율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의 정률 한도뿐 아니라, 정액 한도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

3) 2015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융자" 사업 1건의 변경액은 1.8조원이나, 20% 범위 내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4)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제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2016.6.)」 pp.13~14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5 대통령 자문기구 운영의 개선과제(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청년위원회)

5-1.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사업의 문제점

가. 현 황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은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1]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은 21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단은 이 중 15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예산의 주요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①회의참석수당·인쇄비 등 회의개최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7억 3,800만원), ②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3억 9,000만원), ③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2억 4,000만원) 등이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집행 상 문제점을 주요 예산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전용을 실시하였다.

지원단은 2015년 10월에 연구용역비 부족을 예상하여 6,0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다. 그러나 용역기관과의 협의 부진, 용역수요 미발생 등을 이유로 전용 증액한 예산 6,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전용을 실시하였다.

전용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의 예외로서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불필요한 전용을 실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둘째, 위탁사업 계획이 부실하여 위탁사업비 예산의 절반이 불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원단은 ① 대외 포럼 개최(1억원), ② 여론조사 실시(1억원), ③ 국내세미나 개최(1억원), ④ 홈페이지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9,000만원) 용도로 위탁사업비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집행부진의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위탁사업비가 아닌 정책연구개발비로 일부(2,200만원)만 집행되었고[2], 홈페이지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9,000만원)도 수요예측이 과다하여 3,100만원만 집행되었다.

이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실제 집행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여 대규모 불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회의개최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일반수용비 집행이 부진하였다.

일반수용비 예산은 7억 3,800만원이었으나, 이 중 3억 7,200만원만 집행되었고 8,900만원은 타 사업의 재원으로 전용되었으며 2억 6,100만원은 불용되었다. 일반수용비 예산은 회의개최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이므로, 집행부진의 원인은 회의개최 계획과 실적 간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은 본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분과별 회의를 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예산을 편성하였다.[3]

그러나 2015년 본회의는 단 한 차례 개최되었고, 분과별 회의 역시 월 평균 0.6회 개최되는 등 당초 예상에 비해 회의개최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4] 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참석하는 회의이므로 개최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하지만 분과별 회의는 2014년에도 월 평균 1회 미만으로 개최되었고,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위원에게 월 2회 참석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계획의 현실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1년 평가 설문조사」에 1,000만원, 「중국경제 현황 평가 및 향후 전망 설문조사」에 1,2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다.

3) 본회의 수당(7,200만원), 분과별 회의 수당(2억 200만원)

4) 4개 분과위원회의 2015년도 개최횟수는 총 31회이다.

5-2. 자문기능에 충실한 청년위원회 운영 필요

가. 현 황

청년위원회는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된 것이다. 2015년도 「청년위원회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9억 3,500만원(전년도이월액 7,000만원) 중 44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년위원회가 자문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위탁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는 청년위원회의 기능을 정의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및 소통 활성화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규정하여, 청년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대통령 자문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 운영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위원회 운영비(34억 8,600만원) 외에 「찾아가는 버스」, 「청춘순례 공감·예술캠프」 등 총 19건(정보화사업 제외)의 위탁사업 실시에 7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다.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위탁사업은 소액 규모의 행사성 사업이므로,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찾아가는 청년 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탁사업은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행사성 사업으로서 수혜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대하여 청년위원회는 위탁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며,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탁사업 실시 결과가 부처 간 협업과 대통령 자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성과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별 성과를 점검하여 위탁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1] 2015년 청년위원회 위탁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위탁사업명	집행액
2015 찾아가는 청년 버스 용역	189
2015 청춘순례 공감·예술캠프	100
청년정책 지상토론회위탁	40
청년문화예술프로젝트	40
창조경제오감만족체험단	40
청년 일자리 콘텐츠 공모전	39
영원(Young+One) 프로젝트	40
제3기 2030정책참여단 선발·워크숍	33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	19
청년포털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 위탁	27
제1차 청년 통일 PT 페스티벌	23
2015 착한알바 선포식	22
벤처·강소기업 취업설명회 행사	20
청년문화예술기획단 청기백기	15
청년드림 체험단	15
2015년 능력중심채용 설명회 행사	15
청년창업 핫플레이스 제작	12
제2기 2030정책참여단 발표대회·수료식	12
대학생 원룸실태조사 발표 행사	12
청년위원과 함께하는 고민타파 무박2일 캠프	10
합 계	723

자료: 청년위원회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6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체계 및 성과관리의 개선과제(국유재산관리기금)

가. 현 황

201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에는 25개 부처 총 9,783억원의 공용재산 취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8,375억원이 집행되어 85.6%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1조 2,141억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집행률은 69.0%로 나타난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사업체계 및 성과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세부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 최소 독립단위이며, 내역사업은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세부사업에 종속되는 개념이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이라 함은 세부사업이 신설된 경우를 의미하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 시에도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세부사업은 예산편성의 기본단위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역사업에 비해 더 강한 통제를 받는다. 예컨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세부사업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반면[1], 내역사업은 이러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2]. 따라서 세부사업·내역사업 구분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사업체계를 살펴보면,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 경우에 따라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혼재되어 편성되는 문제가 있다.

---

1)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항'을 세부사업으로 해석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상임위원회에서 A내역사업을 감액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내역사업을 증액하고 대신 B내역사업을 감액하여 세부사업 감액 총량을 유지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사업의 경우, 반포·안산·강서 지역은 건별로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반면, 포항·구미·안동 등은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경찰청 청사시설 신축 사업의 경우에도 강남·광진·남양주북부 등은 각각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그 밖의 지역은 일괄하여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부처별로도 사업체계가 각기 다른데,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청사신축사업이 모두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반면, 통계청의 경우 「통계청 청사시설 취득」이라는 세부사업 내에 모든 청사시설 신축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0억원 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의 구분체계는 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규모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내역사업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소명과 달리,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임에도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사례도 발견된다(북인천세무서 청사신축 281억원·전주소년원 신축 300억원 등).

따라서 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21조제4항은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3], 현재 이를 위한 공통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과목 구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법령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체계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은 일부 매입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축·증축 사업으로서 건설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수 부처의 국유재산 취득사업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도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그러나 실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의 성과관리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공용시설취득 사업이 타 부처 계상사업이라는 이유로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부처가 각각 소관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체계의 통일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201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의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을 보면, ① 국세청·안전행정부·법무부·국민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 부처는 신축사업의 성과지표를 '공정률(사업비 누적집행액/총사업비)'로 설정하고 있으나, ② 대법원·경찰청·고용노동부 등은 '당해연도 예산집행률'로 설정하고 있고[4], ③ 산림청은 '청사시설 취득 개소 수'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④ 해양수산부는 아예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당해연도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경우에도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을 측정하는 경우(대법원)와 예산액 기준 집행률을 측정하는 경우(경찰청·고용노동부)가 혼재되어 체계의 일관성이 없다.

이처럼 하나의 기금 내에 편성되어 있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성과를 각기 다른 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통일된 성과관리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당해연도 예산집행률(집행액/예산현액)[5]'과 '공정률'을 동시에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위사업 내 모든 신축사업의 공정률을 합산하여 그 평균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는 사업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공정률을 지표로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부처의 경우, 단위사업 내 모든 취득사업의 공정률을 합산하여 그 평균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국세청의 경우 「청사」 단위사업 내 21개 신축사업의 총사업비 및 누적집행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정률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6].

---

4) 고용노동부는 성과지표명을 '공정률'로 기재하고 있으나 산출근거는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다.

5) 건설사업은 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예컨대 전년도 이월액 100억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예산액 100억원은 전액 이월한 경우,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은 50%로 나타나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으나, 예산액 기준 집행률은 100%로 나타나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왜곡된다.

6) 국세청 청사 사업 성과지표: (공정률)= 100×(21개 사업의 누적집행액)/(21개 사업의 총사업비)

하지만 공정률은 각각의 건축 건별로 당초 추진일정과 비교하여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지표이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의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사업기간이 서로 다른 사업들과 일괄 합산하는 것은 과정지표를 설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은 일괄 합산 방식은 개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고, 때로는 문제점을 장점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A사업은 목표 대비 공정률 성과가 50%이고 B사업은 당초 목표 대비 공정률 성과가 150%인 경우, A사업은 집행이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고, B사업은 집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으로서 둘 다 적절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두 사업의 공정률을 합산하게 되면 100%로 나타나므로[7], 마치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왜곡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정률의 과정지표 성격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신축 건별로 공정률을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A·B 두 사업의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7 법정배분제도 개편 검토 필요(복권기금)

가. 현 황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은 복권판매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기금에 배분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2004.1.)을 계기로 과거 복권을 발행하였던 기관·기금의 복권발행을 중단하게 하는 대신, 복권기금에서 이들 기관·기금에 복권판매수익금을 배분하여 기존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보상적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각 기관·기금별 배분비율은 동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1)]

이후 복권기금 재원배분의 경직성 문제가 지적되자, 2011년 3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되어,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90%) 및 자금소요(10%)에 근거하여 각 기관·기금에 대한 법정배분비율을 당초 법령 상 비율의 2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법정배분비율 가감제'가 도입되었다.

2015년에는 10개 기관·기금 등에 총 5,392억원이 배분되었다.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표 1] 2015년도 법정배분내역

(단위: 백만원, %)

	2015 결산	법정배분비율	2015 실제배분비율
과학기술진흥기금	73,486	12.583	13.716
국민체육진흥기금	52,316	10.371	9.645
근로복지진흥기금	33,370	5.310	6.266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9,326	6.356	7.373
문화재보호기금	69,593	14.286	12.786
지방자치단체	84,519	17.276	15.530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93,060	17.267	17.2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361	4.286	5.143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33,125	5.846	6.1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3,053	6.428	6.107
합 계	539,209	100.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정배분사업에 장기간 동안 지속하여 복권판매수익금의 35%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가 영구적 보상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으로 인해 경제주체가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나, 영구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 또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복권발행업무를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은 과열경쟁에 의한 사행성 조장과 투명하지 못한 복권수익금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책결정이었으며, 이들 기관들이 복권발행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영구히 복권판매수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배분기관들은 과거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복권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보상받고 있으므로, 법정배분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정배분기관들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법쟁배분비율 가감제'가 대체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의 취지는 법정배분기관별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경직적인 재원배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배분비율 가감제가 도입되어도 개별 기관별로 기본 배분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실시할 뿐, 전체 기관에 대한 배분총량은 35%로 고정되어 있다.[2] 따라서 동 제도는 국가가 영구적 보상을 실시할 수 없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각 기금·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재원을 마련할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법정배분사업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2004년 제도 도입 시 법정배분비율은 복권판매수익금의 30%였으나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이 합류하면서 비율이 35%로 상향조정되었다.

8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원구조 개선과제(대외경제협력기금)

가. 현 황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수입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전입금이 2015년 7,66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81.6%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표 1]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 구성내역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결산액	비중	결산액	비중	결산액	비중
자체수입	1,262	16.9	1,417	20.2	1,378	14.7
일반회계 전입금	4,721	63.1	4,590	65.6	7,664	81.6
여유자금 회수	1,502	20.0	995	14.2	350	3.7
계	7,485	100.0	7,002	100.0	9,39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에 대하여 장기에 저금리로 차관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융자원리금 회수 수입만으로 사업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부족한 수입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성 기금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원인자·손괴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부담금 수입을 통해 충당하여, 수입재원과 지출 간 연계성을 도모한다. 그러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대부분의 수입재원(81.6%)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재원부담주체가 일반 국민이므로, 사업성 기금의 일반적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향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므로[1], 일반회계 전입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대규모 일반회계 전입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둘째, 정부는 지속가능한 ODA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금융을 도입할 계획이나, 이를 위해서는 비구속성 원조방식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2]

「개발금융」이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으로서 시장차입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금리로 개도국을 지원하되, 시장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차이는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재원이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씩 ODA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개발금융을 통한 ODA가 활성화되는 경우 국가 전체 ODA 규모도 증가하게 되므로,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금융 지원방식은 완전한 비구속성 원조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방식은 부분적인 구속성 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비구속성 원조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개발금융은 양허성 차관[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자금을 융자하므로,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완전한 비구속성 원조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자 및 서비스 입찰단계에서부터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ODA 사업 추진관행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발금융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ODA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구속성 원조방식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ODA/GNI 비율을 2015년 0.14%에서 2020년까지 0.2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2) 비구속성 원조란 공적개발원조에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를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자 및 서비스를 ODA 공여국 등 한정된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조건을 부가하는 구속성 원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3) 양허성 차관이란 이자율·상환기관·거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지칭한다.

9 융자계정 정리 필요성 검토(공공자금관리기금)

가. 현 황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융자계정·차관계정의 3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융자계정은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2015년 융자계정의 지출 규모는 2.0조원으로, 「총괄계정·차관계정으로 예수원금 및 이자상환(1.8조원)」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자계정 내 융자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서 379억원이 실집행되었다.

[표 1] 2015년도 융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5				2016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계획액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5,580	3,750	2,570	43.9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10,206	10,053	6,324	61.9	9,185
저소득한부모 가정복지자금융자	2,925	1,500	1,356	46.3	-
민간보육시설 지원	12,150	4,200	1,617	13.3	8,505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건립 융자	26,008	26,008	26,008	100.0	-
합 계	56,869	45,511	37,875	66.6	17,69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융자사업 규모가 과소하여 융자계정 설치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융자사업은 소관부처 특별회계·기금 및 복권기금 등으로 이관이 가능해 보이므로, 융자계정의 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융자계정의 설치목적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주요 산업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융자계정 지출은 융자사업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유사 제도가 다양하여 사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융자사업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8개 사업 1,011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은 2016년 2개 사업 177억원 규모로 급감하였다.

[표 2] 연도별 융자사업 비중 현황

(단위: 개,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 수	8	6	5	6	5	2
사업 규모(결산액)	1,011	1,496	1,310	1,010	455	177

주: 2016년은 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융자계정은 조달금리(국채발행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아 구조적인 조달차손이 발생하는 관계로, 과거 기금 내 총괄 및 차관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아 활용하여 왔다. 그 결과 2015년 지출의 90%가 타 계정에 대한 예수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구성되어 융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정 설치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융자계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기금의 회계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저금리 융자사업 실시는 필연적으로 조달차손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정리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융자계정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단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2015년도 기금존치평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융자사업은 이미 다양한 서민대출사업이 수행 중이므로 본 기금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융자사업은 점차 축소하거나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융자계정이 폐지되는 경우 국민의 복지향상 및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한 융자를 실시할 대체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융자계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없고 특별회계·기금은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목적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기금 융자계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

그러나 다수의 융자사업은 소관부처의 특별회계·기금을 통해 수행이 가능하고, 회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적합한 재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융자계정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익사업이며, 공익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수행가능하다. 복권기금은 주거안정·보훈·소외계층·문화예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하며,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활용하도록 위임재량을 두고 있어 향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 또한 융자계정의 융자사업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2015년 4.5조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의 지출규모를 고려할 때 재원 부담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크지 않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을 정리하고, 소규모 잔여 융자사업을 타 재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상환된 융자원금을 수입재원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일반회계는 특정 사업의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융자사업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즉시 시행에 따른 예산과 집행 간 괴리(예산실)

가. 현 황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는 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일비·숙박비·식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현실에 맞게 숙박비 상한을 조정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실시한 결과, 2015년 1월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여비 숙박비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동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되었다.

[표 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2호 국내 숙박비

	당 초(~2014)	변 경(2015.1~)
숙박비 (1박당)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무원 여비규정이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않고 개정 즉시 시행되어 예산과 집행 간 괴리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5년 1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숙박비 단가가 즉시 인상되었으나, 2015년도 예산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여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인상된 숙박비 단가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2016년 1월부터 예산의 내용과 규정이 일치하게 되었으므로, 예산과 집행 간 괴리가 해소되는데 1년이 소요되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은 2차례 더 있었는데, 모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2010년 11월에는 즉시 인상된 국외여비 숙박비 단가가 예산에 반영되는데 1년 2개월이 소요되었고, 2013년 1월 즉시 인상된 국내여비 숙박비 단가가 예산에 반영되는데 1년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예산 단가와 집행 단가가 불일치하는 경우, 예산부족 또는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하여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숙박비 단가를 인하하여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여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을 위한 부처 간 협의 시 개정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중에 규정을 개정하여 단가를 인상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차년도부터 시행되도록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예산과 집행 간 불일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행 전 경과기간을 두는 경우 적시에 여비 단가 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년 예산안 편성 시마다 주기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공무원 여비규정이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불규칙하게 개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여비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개별법에 근거한 국유재산특례 현황 조사 및 관리 필요 (국유재산관리기금)

가. 현 황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의 ① 사용료 감면, ② 장기 사용허가 및 ③ 양여 등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손실과 국유재산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2)]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사용료 감면·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로, 2015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다.[3)]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에 규정된 특례 목록만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한 국유재산특례 운용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5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특례 목록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

---

1)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 시 일정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는 10년 이내로 하며, 양여 시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하였으며, 별표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국유재산특례 현황은 포함하지 않았다.

개별법에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방만한 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개별법률에「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유재산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실제 운용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표 1]「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없는 개별법 상 국유재산특례 규정 사례

유형	법률 규정
1. 3.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제6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항 및 제2항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2항 *동 법 제9조는 별표에 반영됨.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항
1.	「관광진흥법」제76조(재정지원) 제3항
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제1항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3항
3.	「농어촌정비법」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항
1.	「도서관법」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3항
3.	「문화예술진흥법」제37조(예술의 전당) 제4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1. 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항
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제1항
1.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1.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 제3항 및 제5항

주: 유형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른 특례의 분류로서 1. 사용료등 감면, 2. 장기 사용허가등, 3. 양여를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의 준비 및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대외경제협력기금)

가. 현 황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사업은 높은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지닌 국제금융개발기구에 융자를 실시하여 이를 재원으로 국제금융개발기구가 ODA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동안 실시된 바 없는 새로운 ODA 사업방식이다.

2014년 수출입은행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협의 진행상황을 주시한 결과,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는 2015년 IFAD에 $1,000만의 차관을 공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014년 9월 동 융자사업의 신설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요구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110억원의 예산이 2015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마무리 단계에서 반영되었다.

그러나 2015년 독일재건은행(KFW)이 우리나라가 제안한 차관의 10배 이상 규모의 차관을 IFAD에 제안함에 따라, IFAD는 수출입은행과의 차관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어 예산 11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은 사업준비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공식적인 요청이나 양자 간 협정 체결없이 낙관적인 기대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국제기구에 대한 차관 공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도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ODA 차관의 성격과 함께,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 공여라는 점에서 국제부담금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정부를 대상으로 ODA 차관을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의 공식적인 요청을 우리 정부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사업으로 반영한다. 또한,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한다.[1)]

그런데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은 IFAD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고 IFAD와 우리 정부 간 차관공여를 실시하겠다는 공식 협정 또한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처럼 상대측의 공식 요청이나 협정 체결 없이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기준환율에 맞지 않게 사업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

201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기준환율은 1,030원/$이나, 동 사업은 $1,000만 규모의 차관공여를 계획하면서 1,100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110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7억원의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됨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과다편성된 7억원은 다른 사업용도로 활용될 수 있었음에도 동 사업에 편성되어 전액 불용되어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준환율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1)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p.207

2 사업수요 부족에 따른 민간협력차관 전액 불용(대외경제협력기금)

가. 현 황

「민간협력차관」사업은 개도국에 소재한 ODA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민간협력차관 사전조사를 위한 컨설팅 예산으로 「민간협력사업진행컨설팅」사업도 함께 신규편성하였다.

두 사업의 2015년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협력차관 사업은 계획액 3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민간협력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은 계획액 2억원 중 1,300만원만 집행되었고 1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획재정부는 사업수요를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민간협력차관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원대상이 전무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동 사업의 표면적인 목적은 개도국 정부가 아닌 개도국 기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현지에 소재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우리 청년의 해외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 2건(20억원) 및 청년창업 5건(10억원)'을 동 사업예산의 산출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격후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면서 OECD DAC에서 규정하는 ODA 적격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아 사업수요가 부족하였고, 10여 개의 후보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구체성 부족·채권보전방안 미흡·현지법인 설립 불허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이미 창업한 청년을 지원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창업을 장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지 않은 ODA 분야에서 해외창업을 실시한 청년 사례를 찾기 어렵고, 동 사업 신설을 계기로 우리 청년의 해외창업이 활성화된다는

전망은 오랜 사전준비를 요하는 해외창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예산(30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체계적 시행을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표적 ODA 분야를 규정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6년 6월 현재까지 승인실적이 없으므로 사업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 강구와 함께, 동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추경 편성 시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대외경제국)

가. 현 황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은 정부 출자를 통하여 수출입은행에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400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50억원이 증액된 예산현액 1,150억원이 전액 출자되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정부안 규모는 1,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일부 자부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50억원이 감액된 750억원이 반영되었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계획은 ① 중소·중견기업 등 수출팩토링[1], ② 수출부진 품목 지원, ③ 엔저 및 유로화약세 피해기업 지원, ④ 서비스 수출금융 등 4개 유형의 대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대출 목표는 1.25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었으며, 실제 2.0조원을 추가 공급하여 총 대출실적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였다.

[표 1] 추경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실적

	추가지원	추경에 따른 지원 계획		지원실적
		출자 전	출자 후	
중소·중견기업 등 해외팩토링	0.5조원	2.9조원	3.4조원	3.0조원
수출부진 품목 지원	0.5조원	6조원	6.5조원	6.7조원
엔저 및 유로화약세 피해기업 지원	0.15조원	0.1조원	0.25조원	0.3조원
서비스 수출금융	0.1조원	2.5조원	2.6조원	3.5조원
합 계	**1.25조원**	**11.5조원**	**12.75조원**	**13.5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1) 국내수출업자가 해외 업체와 외상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납한 경우 향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업자가 대금을 수취할 권리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여 위험을 대신 부담한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출입은행의 대출실적이 추경 목표를 상회하였으나, 제조업 중심의 여신공급 계획과 달리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대기업의 수혜비율이 높았다.

수출입은행의 대출실적은 추경 목표 1.25조원을 크게 상회한 2.0조원을 달성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추경에 따른 추가지원 목표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이 1.15조원(중소·중견기업 등 수출팩토링, 수출부진 품목 지원, 엔저 및 유로화약세 피해기업 지원), 서비스업 부문이 0.1조원으로 추경 계획 상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2)]

그러나 실제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은 추가공급 계획 1.15조원 중 0.97조원이 지원된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계획 0.1조원의 10배 이상인 1.01조원이 추가공급되었다.

보건의료·문화콘텐츠·관광 등 국내서비스의 해외 수출은 그 성격상 중소기업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서비스 수출금융 공급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게 집중된다. 수출 팩토링·수출 부진품목의 대기업 지원비중은 30~35%이고, 엔저 등 피해기업은 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나, 서비스 수출금융의 경우 공급액의 약 60%(3.5조원 중 2.1조원)가 대기업에게 지원되었다.

[표 2] 유형별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

		집행실적	
		2015.6월말(추경 전)	2015.12월말(추경 후)
수출 팩토링	대기업	4,793(34.5)	10,198(34.5)
	중견·중소기업	9,118(65.5)	19,089(65.5)
	소 계	13,912(100.)	29,557(100.0)
수출 부진품목 지원	대기업	11,254(32.2)	21,189(31.6)
	중견·중소기업	23,697(67.8)	45,891(68.4)
	소 계	34,950(100.0)	67,080(100.0)
엔저 및 유로화약세 피해기업 지원	대기업	-	-
	중견·중소기업	903(100.0)	3,051(100.0)
	소 계	903(100.0)	3,051(100.0)
서비스 수출금융	대기업	8,552(56.7)	20,771(59.2)
	중견·중소기업	6,525(43.3)	14,321(40.8)
	소 계	15,077(100.0)	35,092(100.0)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2) 엔저 및 유로화약세 피해기업 지원액 0.3조원 중 제조업 지원액이 91.4%로 대부분이며 서비스업 지원액은 0.6%에 불과하였으므로, 엔저 및 유로화약세 피해기업 지원 유형을 제조업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대출 수행과정에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여 유형별 여신공급 규모를 조정하였다는 입장이다. 수요가 부족했던 수출 팩토링 대출재원의 일부(0.4조원)를 활용하여, 다른 유형의 여신공급을 모두 늘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이 일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수출부진품목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여신공급량은 3.5조원으로 재원이 조기소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수출부진품목에 대한 대출수요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반기 여신공급량은 3.2조원으로 상반기보다 적었는데, 이는 수출부진품목의 하반기 수출실적 감소에도 기인하나[3], 추경에 따른 여신공급계획(6.5조원)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량을 일부 조정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서비스 수출금융의 경우 추경계획(2.6조원)에도 불구하고, 상반기(1.5조원)에 비해 하반기(2.0조원)에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여신을 매우 활발하게 공급하였다. 따라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수출 지원에 정책의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향유한 것은 당초 추경 편성 시 계획했던 정책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집행이라 할 것이다.[4]

3) 수출부진품목의 수출실적은 2015년 상반기 $623억에서 하반기 $593억으로 소폭 감소하였다(상반기 대비 −5%).

4)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수출금융 규모의 양적 확대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상 문제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가. 현 황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사업은 보조금의 모든 처리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보공개를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보화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예산액 88억 4,5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73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00만원이 불용되었다.

동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68억 5,6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표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연구개발비(260)	1,989	6,856	8,845	1,468	7,345	32
자산취득(430-01)	6,856	-6,856	-	-	-	-
합 계	8,845	±6,856	8,845	1,468	7,345	3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 사업은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예산안편성지침 규정과 달리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대규모 전용이 발생하였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1] BPR 및 ISP는 정보화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컨설팅 사업으로, 그 이후에 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 등 구체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계획이 결정된다.

1)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p.49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BPR 및 ISP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장비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취득비 68억 5,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BPR 및 ISP를 수립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우선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을 전액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35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임에도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 정보시스템구축의 방향조차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큰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PR 및 ISP를 사전에 수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사업은 자산취득비보다 연구개발비가 우선적으로 소요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도화된 정보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신중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여 사업 초기에는 장비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보다는 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우선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편성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와 함께, 사업계획이 매우 미흡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당초 계획과 달리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다.

동 사업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공고가 2015년 12월에 이루어지고 실제 계약은 2016년 2월에 체결됨에 따라, 기집행한 연구개발비 14억 6,800만원을 제외한 73억 4,5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이처럼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것은 담당 조직 신설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과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이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신설되어 담당 조직이 변경되었다.[2] 이처럼 새로 규정을 마련하여 조직을 신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신설 이후 업무파악·인수인계 등을 실시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다.

2) 국무총리훈령 제653호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2015.10.1.)

동 사업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전용을 실시하는 등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추진마저 지연되어 예산 대부분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행태는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금관리비 부담 전가의 문제점(대외경제협력기금)

가. 현 황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다.[1]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는 수출입은행의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5년도 인건비 99억원 및 기금관리비 31억원이 모두 전액 집행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령에 따라 위탁비용은 기금이 부담하여야 하나, 매년 약 30%의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용 부담이 수출입은행에 전가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년 예산부족분이 발생하여 수출입은행의 재원으로 이를 충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실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 중 약 70%에 대해서만 기금이 부담하였으며, 수출입은행이 자체재원으로 부담한 금액은 5년간 216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위탁비용에 대한 기금 부담비율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실지출비용(A)	9,893	11,640	14,099	15,785	18,630	70,047
기금부담분(B)	5,918	8,520	9,625	11,512	12,915	48,490
수출입은행 부담(C)	3,975	3,120	4,474	4,273	5,715	21,557
기금부담비율(B/A)	59.8	73.2	68.3	72.9	69.3	69.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용도로서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을 명시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고 적시하고 있다.[2]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업무 위탁비용을 기금 재원이 아닌 수출입은행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부족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인건비의 경우 2015년 기금 부담률이 79.4%로서 수출입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 비용은 25억원이다. 위탁사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된다(2016년 3.0%). 그런데 인건비 사업예산은 실제 지출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편성액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예산 과소편성 관행이 반복되는 한 예산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기금관리비는 기금의 부담률이 49.2%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기금관리비 부족액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ODA사업의 특성 상 해외사무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 비용을 기금에서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최근 5년간 기금관리비에 대한 기금 부담비율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지출 직접경비(A)	3,205	3,369	4,103	4,611	6,209
- 경협여비	713	753	915	1,007	996
- 도서인쇄비	54	84	84	70	59
- 광고선전비	117	88	207	186	171
- 용역비	29	49	57	64	88
- 교육훈련비	62	116	161	115	156
- 협력비(협력여비,협력용역비, 협력제비)	115	162	169	201	195
- 업무추진비	82	110	104	84	90
- 사무소(주재원) 운영비	1,592	1,495	1,893	2,296	3,646
- 기타인건비*	439	512	513	588	808
기금관리비(위탁수수료)(B)	1,593	2,289	2,479	2,731	3,056
보전율(B/A)	49.7	67.9	60.4	59.2	49.2

주: * 정원관리대상 아닌 별정직 직원(계약직 분야별 기술역 및 연구원)의 인건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법령을 준수하여 수출입은행 위탁비용을 실수요에 맞게 전액 기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의 실지출비용의 집행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추가 비용이 모두 위탁관리 목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며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수출입은행의 위탁비용을 100% 보전하는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기금관리 명목으로 편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준환율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 및 집행(국제금융협력국)

가. 현 황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사업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출연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은 117억 7,000만원($1,100만)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000만은 GCF 사업출연금이고 $100만은 GCF 사무국 운영비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예산 중 11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 사업은 2015년도 정부 예산편성 기준환율(1,030원/$)을 위반하여 독자적인 기준환율(1,070원/$)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기준환율은 1,030원/$로, 정부의 모든 외화예산은 동 기준환율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외화예산은 정부 기준환율보다 40원/$ 높은 1,070원/$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예산액이 4억 4,000만원 과다편성되었다. 다만, 2015년 하반기 환율 상승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하였으므로, 과다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최종 환율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d-Brain을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주의하여 환율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기준환율 위반은 업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d-Brain 입력 실수로 인해 국가예산의 규모가 변경되고 정책효과에 변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1) 기획재정부는 환차손 발생으로 인해 $50만을 GCF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 집행 상 문제점(재정기획국)

가. 현 황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위탁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9억 6,900만원으로, 이 중 8억 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다. 동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KDI에 대한 위탁사업비(2015년 8억 6,200만원)이며, KDI는 작업반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매년 KDI와의 위탁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나, 연례적인 낙찰차액이 발생하므로 예산편성에 비효율이 발생한다.

2015년도 KDI 위탁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위탁사업비 8억 6,200만원 중 1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중 7,800만원은 낙찰차액이다.[1)]

동 사업의 위탁사업비 낙찰차액은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학술연구단체인 KDI의 용역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때문이다.[2)] 2015년에는 계약금액 7억 8,400만원의 10%, 2013년 및 2014년에는 계약금액 8억 3,500만원의 10%가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다.

KDI 외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다른 연구기관을 찾기 어려우므로, 기획재정부는 매년 일반공개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KDI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KDI는 2005년 이후 12년째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6,500만원은 정산잔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따라서 앞으로도 KDI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정한 규모의 낙찰차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매년 전액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분을 감안하여 위탁사업비 예산규모를 감액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일반공개경쟁입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업무를 KDI에 위탁하거나 사업비를 출연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년 연속 국외여비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국외여비 예산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의 중기재정운용 현황 조사를 이유로 2015년도 동 사업에 국외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재정기획국이 신규조직으로 신설되어 예산실로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업무를 이관 받음에 따라, 국 내부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기획국이 신설되기 이전인 2014년에도 국외여비 예산 1,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016년도 국외여비 예산 1,100만원도 2016년 6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동 사업의 국외여비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사업명 및 소관 프로그램 변경 필요(복권기금)

가. 현 황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은 복권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년 단위로 예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5년도 계획액은 5,170억원이며 전액 계획대로 집행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 사업은 전출금이 아닌 예탁금이므로, 사업성격에 맞게 사업명을 수정하고 소관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한다.

예산집행지침의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전출금은 타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이며, 예탁금은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따라서 대가성이 없는 전출금과 달리 예탁금은 향후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받게 된다.

동 사업은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것이므로, 그 성격은 전출금이 아니라 예탁금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동 사업의 예산과목을 '공공기금 예탁금(480-03)'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타 기금에 전출을 실시하는 다른 법정배분사업들과 함께 「기금 간 거래(전출금, 8900)」라는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 편성되어 있다. 동 프로그램 내 다른 세부사업들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국민체육기금으로의 전출금 등 복권기금의 재원을 법정배분비율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 배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그 성질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예탁으로서 프로그램 내 타 사업과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동 사업지출에 대응하는 수입예산(기금예탁원금회수·기금예탁이자수입)은 「예탁원금회수」 항에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수입 항목은 예탁금으로 편성하면서 지출 항목은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수입-지출 간 체계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 사업의 명칭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8500)」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표 1] 프로그램 이관 방안

	현행		이관 후	
	명칭	코드	명칭	코드
프로그램	기금간거래(전출금)	89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8500
단위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	892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복권기금)	8511
세부사업	복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89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미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 세 청

Ⅰ 결산 개요

1 현 황

201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 결산액은 총 9,514억원으로 예산액 1조 153억원 대비 93.7%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각각 2,381억원, 2조 8,337억원이다.

[표 1]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A)					
예 산	1,015,342	1,015,342	4,023,136	951,385	2,833,673	238,078	93.7
- 일반회계	934,290	934,290	4,019,606	947,855	2,833,673	238,078	101.5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1,052	81,052	3,530	3,530	-	-	4.4
총 계	1,015,342	1,015,342	4,023,136	951,385	2,833,673	238,078	93.7

자료: 국세청

총계 기준 세출 결산액은 총 1조 5,433억원으로 예산현액 1조 6,000억원 대비 96.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억원, 불용액 565억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총지출 기준 결산은 총계 기준과 동일하다.

[표 2]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예 산	1,587,273	1,587,273	1,600,046	1,543,258	302	56,486	96.5
- 일반회계	1,535,074	1,535,074	1,536,722	1,480,552	302	55,868	96.3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2,199	52,199	63,324	62,706	-	618	99.0
총 계	1,587,273	1,587,273	1,600,046	1,543,258	302	56,486	96.5

자료: 국세청

윤나나 예산분석관(nanay@assembly.go.kr, 788-3736)

2 주요 사업체계

2015회계연도 국세청 세출예산은 총 1조 5,873억원이며 1개 분야, 1개부문 5개 프로그램, 25개 단위사업, 6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국세청의 프로그램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국세청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과세기반확충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 2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등 3개
		탈세대응강화	국세징수활동지원 등 5개	부과·징수지원 등 8개
		체납·징수관리	납세고지서 등 발송 등 3개	납세고지서 등 발송 등 4개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등 4개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등 4개
		국세행정지원	인건비 등 11개	인건비 등 50개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국세청의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세통합시스템 운영관리(정보화), ② 조세박물관 운영사업** 등이 있다. 국세통합시스템 운영관리는 정보화센터로의 과세자료 운송예산의 과다 계상에 따라 3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세박물관 운영사업은 보유 중인 시설 장비 중 이전 가능 물품 가액 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② 제주혁신도시 이전비용사업** 등이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2013년 예산을 편성한 이후 지급한 실적이 없어 이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1] 제주혁신도시 이전비용은 중복 계상에 따른 이전비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2]

이하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① 조세박물관 운영사업,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사업 등을 비롯하여 **③ 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분석한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2) 제주혁신도시 이전비용사업: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Ⅱ 주요 현안 분석

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사업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심사정책국)

가. 현 황

국세청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의 탈세적발 확률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예산은 31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부족에 따라 8억 9,600만원을 이용하여 예산현액은 40억 5,300만원이고, 이 중 40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200만원이 불용되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에는 발급거부 신고포상금과 미발급 신고포상금이 있다.[1)]

[표 1]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건수	383	481	651	2,998	3,871
	금액	167	186	271	3,029	1,913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건수	2,082	1,785	1,927	2,300	1,697
	금액	325	259	317	357	175
합 계	건수	2,465	2,266	2,578	5,298	5,568
	금액	492	445	588	3,386	2,088

자료: 국세청

1)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도: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하는 보상금이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14.6.30 이전은 30만원)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급한도: 건당 100만원, 동일인 연간 500만원, '14.6.30 이전은 각각 300만원, 1,500만원)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2015년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예산은 11억 9,200만원이었으나 포상금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8억 9,600만원을 이용하여 총 20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2014년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계량분석을 통해 예산 부족에 따른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미발급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부족에 따른 이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편성이 요구된다.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되면 구매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에는 과태료(미발급금액의 50%)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현황을 보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의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의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의 최종 목적이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인 점을 고려할 때, 의무발급대상자의 과태료 증가 및 신고포상금의 증가는 바람직한 측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세한 의무발급대상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이란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더라도,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무발급금액(2014년 7월 이전은 30만원 → 2014년 7월 이후 10만원)이상 현금매출을 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표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

시행일	구분	업 종
2010.4.1	30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2010.7.1	4개 업종 추가지정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3.10.1	10개 업종 추가지정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4.2.21	1개 업종 지정제외	· 도선사업
2015.5.1	5개 업종 추가(정정)* 지정	· 장의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7.1 (예정)	5개 업종 추가지정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주: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은 한 개 업종으로 이 중 장례식장은 2010년 4월 1일 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2015년 5월 1일부터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전체가 의무발행업종으로 정정 지정되었음

자료: 국세청

2 가산금, 과태료 등 수입 실적 제고 필요(징세법무국)

가. 현 황

국세청은 경상이전수입으로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과태료, 변상금, 가산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중이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명령사항 및 의무위반자 제재에 대한 과료로, 2015년 징수결정액은 1,451억 4,700만원이나 수납액은 645억 9,600만원이다.

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 등으로 2015년 징수결정액은 39억 700만원이나 수납액은 400만원이다.

가산금은 국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체납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최고 75%까지 가산하는 제도이다. 2015년 징수결정액은 3조 7,827억 1,600만원이이나 8,008억 2,500만원이 수납되었다.

[표 1] 국세청 주요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경상이전수입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과 태 료	97,155	145,147	64,596	44.5	76,628	3,923
변 상 금	15	3,907	4	0.1	3,450	453
가 산 금	736,400	3,782,716	800,825	21.2	2,748,341	233,550

자료: 국세청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세청은 가산금을 비롯한 과태료·변상금 등 수입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세청 수입으로 계상 중인 가산금·과태료·변상금 등은 매년 수입 실적 저조로 인하여 지적을 받고 있으나 실적 개선은 미미한 편이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수입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납입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채권에 대한 회수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국가채권 관리 및 연체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체납자 평가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FIU정보·출국규제·명단공개·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정리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효율적인 체납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이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납률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태료, 변상금, 가산금에 대한 수납률 저조는 수납자와 미수납자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및 비용을 수반하며, 수납액 장기화에 따른 징수가능성이 낮아져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압류재산공매 적정 예산편성 및 비목 변경 필요(징세법무국)

가. 현 황

국세청은 체납징수관리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압류재산공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으로 45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부족에 따라 3억 1,700만원을 이용하여 예산현액은 48억 9,3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공매행정비」, 「대위등기비」, 「은닉재산신고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매행정비는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재산의 매각절차 과정 중 발생하는 공공요금·공매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위등기비는 등기 재산의 실질적인 권리가 체납자에게 있으나 실소유자 명의로 미등기·미이전된 경우 세무서장이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체납자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압류할 수 있도록 대위등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은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된 재산이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표 1] 압류재산공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압류재산공매	4,576	-	317	4,893	4,893	-	-
- 공매행정비	3,610	-	−547	3,063	3,063	-	-
- 대위등기비	616	-	363	979	979	-	-
- 은닉재산신고포상금	350	-	501	851	851	-	-

주: 대위등기비의 이·전용은 공매행정비에서 내역조정된 금액이며,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이전용은 공매행정비에서 내역조정 1억 8,400만원, 인건비에서 이용된 3억 1,700만원으로 구성됨

자료: 국세청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압류재산공매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적정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3개의 내역사업에서 모두 내역변경 및 이·전용이 발생하였다.

등기대위비의 경우 예산부족에 따라 공매행정비에서 3억 6,300만원이 내역조정되었으며,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은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포상금 부족에 의해 5억 100만원이 내역변경 및 전용되어 8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은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에도 적정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1] 그러나 전체 집행액 8억 5,100만원의 58.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역변경 및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동 포상금의 예산편성이 지나치게 과소편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대위등기비,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공매행정비의 내역 조정 및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지급률 개정효과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은 기존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과 내역 조정된 금액은 운영비(210목)로 지급되었고, 이후 전용된 3억 1,700만원만 보전금(310목)으로 지급되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할 때 보전금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보상금·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된 재산이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전금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1)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으로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채택된 바 있다.

2 조세박물관 이전 비용에 대한 집행 관리 개선 필요(징세법무국)

가. 현 황

국세청은 조세관련 유물의 전시 및 수집을 통하여 조세제도 변천과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조세박물관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은 14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다.

조세박물관은 2015년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였으며, 이전 비용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다. 2015년 조세박물관 이전비 예산으로 1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세청은 시설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조세박물관 이전비 집행에 있어서 전시시설물, 전시연출조명, 전시용 영상장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를 집행함에 있어, 다른 비목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조세박물관 세종시 이전 예산 검토시 박물관 신축이 아닌 이전을 위한 실내인테리어, 전시연출 및 실물모형 제작으로 보아 일반수용비로 편성 및 집행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박물관 이전비는 실질적으로 이전비용이라기보다는 리모델링 비용에 해당하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시설비에 해당한다.

조세박물관 이전사업의 내역서를 살펴보면 '조세박물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예산'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는 조세박물관의 이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으로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조세박물관 이전 내역서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금액(총계기준)
합 계	1,562
전시시설물부문	299
전시연출조명부문	105
전시용영상장비부문	178
전시설명패널부문	149
전시실물모형부문	166
전시용영상부문	160
전시용정보영상부문	116
진열장부문	52
수장고부문	337

자료: 국세청

3 탈세제보포상금 등의 제도개선 필요(조사국)

가. 현 황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국가재정의 원활한 확보,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탈세제보포상금 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탈세제보포상금 등은 예산으로 11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반활동비」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등은 탈세제보포상금과 차명계좌신고포상금으로 구성되어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차명계좌신고포상금은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탈세제보포상금과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의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차명계좌신고포상금은 2013년 도입된 후 2014년과 2015년 모두 포상금 예산액보다 지급금액이 많으며, 탈세제보포상금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모두 포상금 예산보다 지급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역조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현재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는 1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에 대해 그 규모와 무관하게 포상금 지급액이 건당 1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추징세액은 극대화하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포상금 인상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접수건수	처리실적		포상금 지급		포상금 예산
		과세활용	부과세액 (억원)	지급건수	지급금액	
2015	21,088	집계중	집계중	393	10,348	10,784
2014	19,442	5,013	15,301	336	8,700	10,205
2013	18,770	4,758	13,211	197	3,424	2,979

주: 과세활용 건수: 세무조사 + 현장확인
자료: 국세청

[표 2]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확보건수	처리실적		포상금 지급		포상금 예산
		과세활용	부과세액 (억원)	지급건수	지급금액	
2015	13,326	집계중	집계중	1,018	694.5	259
2014	12,105	3,480	2,430	628	314.0	300
2013(도입)	8,795	1,138	1,159	217	108.5	-

주: 과세활용 건수: 세무조사 + 현장확인
자료: 국세청

관 세 청

Ⅰ 결산 개요

1 현 황

201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수입 결산액은 총 480억 4,500만원으로 예산액 366억 7,200만원 대비 131.0% 수납 되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각각 9,400만원, 2,409억 8,300만원이다.

[표 1] 관세청 소관 세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A)					
일반회계	36,672	36,672	289,122	48,045	240,983	94	131.0

자료: 관세청

총계 기준 세출·지출 결산액은 4,958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5,115억 4,600만원 대비 96.9%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3억 1,300만원, 불용액 104억 2,0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총지출 기준 결산은 총계 기준과 동일하다.

[표 2] 관세청 소관 세출·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일반회계	481,386	481,386	511,546	495,814	5,313	10,420	96.9

자료: 관세청

윤나나 예산분석관(nanay@assembly.go.kr, 788-3736)

2 주요 사업체계

2015회계연도 관세청 세출예산은 총 4,813억 8,600만원이며 1개 분야, 1개 부문, 5개 프로그램, 14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관세청의 분야·부문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관세청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및물류촉진지원 등 2개	특송물류센터 구축 등 5개
		관세심사	관세탈루심사지원	관세탈루심사
		밀수감시단속	밀수단속지원 등 2개	밀수단속 등 3개
		정보화및국제협력	관세행정정보화 등 2개	국제협력 등 5개
		관세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등 7개	본부기본경비 등 25개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관세청의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등이 있다.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는 사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전자봉인을 지속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3,000만원이 감액(1억→7,000만원)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②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등이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2013년 예산을 편성한 이후 지급한 실적이 없어 이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1]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은 세관행정 현대화 세미나의 유사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2]

이하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①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사업 등을 비롯하여 **③ 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분석한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2)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II 주요 현안 분석

1 수출입통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통관지원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수출입통관」은 수출입물품·여행자 통관, 보세화물 관리, FTA이행지원 등 통관물류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프로그램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수출입통관 프로그램 예산은 19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송화물 자동분류 설비구축의 전년도 이월액의 집행에 의해 239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사업과 「FTA이행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수출입통관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4 결산	2015 본예산	2015 추경	2015 결산
수출입통관			14,106	19,686	19,686	23,938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14,106	13,872	13,872	18,214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5,040	3,697	3,697	3,489
		여행자통관선진화	1,392	1,415	1,415	1,367
		FTA이행지원(15년부터 단위사업 이관)	6,161	-	-	-
		특송화물 자동분류설비 구축	-	7,246	7,246	11,845
		물품통관	1,513	1,514	1,514	1,513
	FTA이행지원		-	5,814	5,814	5,724
		FTA이행지원	-	5,814	5,814	5,724

자료: 관세청

1-1.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통관지원국)

가. 현 황

관세청은 압·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보관료 지급 및 폐기·멸각대상물품 적기 처리, 수출입화물 검사·감정 지원, 보세화물 처리 등 수출입물품 통관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으로 36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4억 8,900만원은 집행되었고 2억 8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입가격공개품목 가격조사 사업의 취소는 사업 편성 당시 계획 수립의 미흡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입가격공개품목 가격조사」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액 불용되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고려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후에 실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수당이 여러 사업에서 집행되었으므로 이를 일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수당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는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으로 집행되었으나 일부는 「기본경비」, 「관세행정지원」 등으로 집행되었다.

지방세관별로 동일 경비를 다른 사업에서 집행한 것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관세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해당한다.

특허심사위원회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로 일치하는 이상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동일 사업에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는 수출입제품의 통관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에서 일관된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세청의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특허심사위원회 참가비 및 수당 집행 현황

(단위: 원)

세관	수당이 집행된 세부사업	금액
광주세관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600,000
대구세관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2,089,400
서울세관	서울본부 기본경비	400,000
수원세관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500,000
	인천본부 기본경비	400,000
인천공항세관	밀수단속	800,000
인천세관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4,400,000
	관세행정관리	600,000
평택세관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1,080,000
	평택직할 기본경비	2,000,000
	관세행정관리	640,000
부산세관	부산본부 기본경비	5,302,200
	물품통관	710,000
합 계		19,521,600

자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2. FTA 이행지원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 사업 역할 분담 필요(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가. 현 황

관세청은 정부의 FTA추진에 따른 차질 없는 이행과 무역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FTA이행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으로 5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57억 2,400만원을 집행되고 9,000만원이 불용되었다.

관세청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중소기업원산지관리지원」 및 「FTA 집행관리」사업을 수행 중이다.

중소기업원산지관리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 및 검증 대응을 지원하고, FTA 인증 확대 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참석, 설명회·간담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MOU를 체결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FTA활용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예산으로 1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다.

FTA 집행관리 사업은 지역 세관의 FTA지원 전담조직을 통해 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YES FTA 센터(상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예산으로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다.

[표 3] FTA이행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FTA이행지원	5,814	-	-	5,814	5,724	-	90
- 중소기업원산지관리지원	1,594	-	-	1,594	1,594	-	-
- FTA집행관리	126	-	-	126	126	-	-
- 원산지정보수집·분석 위탁	3,417	-	-	3,417	3,334	-	83
- 원산지검증	281	-	-	281	277	-	4
- FTA협상 및 이행	305	-	-	305	305	-	-
- 원산지관리시스템개선	92	-	-	92	89	-	3

자료: 관세청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원산지관리지원 사업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사업과 지원내용이 유사하므로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은 FTA 현장컨설팅, 영세협력 기업 원산지 관리 대행 서비스,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62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현장컨설팅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관세법인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품목분류에서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등 FTA 전반 사항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주요 산업단지, 업종별 단체에 관세사, 원산지관리사를 파견하여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대행서비스는 관세법인(관세사) 등이 영세기업에게 원산지확인(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서류 작성 및 보관까지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관세청도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지원을 통해 원산지 판정을 바탕으로 수출·생산과정에서 실제 원산지증명서(C/O) 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대행 지원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갱신 원산지검증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FTA집행관리 사업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FTA 컨설팅 사업은 FTA 집행업무의 핵심인 품목분류, 원산지검증,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세관직원이 컨설팅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의 사업은 대상이 동일하고, 그 방식이 컨설팅 및 영세업체에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발급대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 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TA 컨설팅의 경우 관세청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청 주도의 협업 등에 대한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표 4]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FTA 관련 사업 비교

추진기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등
유사 추진 내용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여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	품목 분류에서 원산지관리 및 사후 검증 등 전반 사항 종합 컨설팅하는 「OK컨설팅 사업」, 기초서류 작성 등 원산지 확인(증명)서 발급 과정 및 원산지 판정 등 전문가 노하우를 집중 지원하는 「아웃소싱」 등을 통해 지원

자료: 관세청

[표 5]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FTA 컨설팅 비교

추진기관	관세청(본부세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
지원대상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간	5일	10일
지원내용	○ (A형: FTA활용 종합컨설팅) 중소기업에 적합한 FTA-PASS 구축·운영,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등 ○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컨설팅) 종합컨설팅이 필요없는 기업중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위 유형중 택일	○ (OK컨설팅) 품목 분류에서 원산지관리 및 사후 검증 등 전반 사항을 종합 컨설팅 ○ (아웃소싱) 기초서류 작성 등 원산지 확인(증명)서 발급 과정 및 원산지 판정 등 전문가 노하우를 집중 지원
전문가 자격	매년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통과 (이수평가제)한 등록 관세사(1년 위촉) → FTA전문성 강화 필수	협약을 맺은 6~8개 관세 법인 소속 관세사가 참여 → 매년 입찰 공지
지원금액 (기업부담)	최대 4백만원 이내 (기업규모별 0~40%)	최대 4백만원 이내 (기업규모별 0~40%)

자료: 관세청

III 개별 사업 분석

1 기계기구매각대 과다 세입계상 시정 필요(심사정책국)

가. 현 황

관세청은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 차량, 보일러 등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기구의 매각에 따른 수입을 「기계기구매각대」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은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800만원, 미수납액은 100만원이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세청은 기계기구매각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계기구매각대는 예산 대비 수납률이 17.4%에 불과하여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다. 관세청은 수납률 저조에 대한 사유로 감시정(부산325호)을 건조·배치 후 노후선박인 부산386호를 용도폐지 및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산325호 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노후선박인 부산386호를 2016년 3월에 매각하게 되어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

그러나 2015년 예산편성 당시 제출한 각목명세서에는 산출근거로 최근 5년 수입실적 평균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 중고감시정 매각 계획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2)]

기계기구매각대는 관세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구를 매각하는 것으로써, 그 계획을 관세청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고, 기관외부의 예측할 수 없는 요소의 작용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전 계획 수립이 충분히 가능한 세입이다. 또한 기계기구가 관세청이 보유한 자산이며 이를 통해 관세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유한 기계기구매각에 대한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1) 2016년 3월 매각한 부산386호의 매각금액은 4,666만원이다.

2) 관세청, 「2015년 세입 각목명세서」, p.3

2 관세소송비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기획조정관)

가. 현 황

관세청은 본청 및 산하기관의 원활한 관세행정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적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관세행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5년 예산은 81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용에 의해 예산현액은 87억 4,100만원이며 이 중 85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다.

관세청은 관세소송비용을 동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송패소 비용 증가로 인해 6억 2,200만원을 전용 하여 6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세청은 관세소송비용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소송 패소에 대비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 예산은 해마다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그러나 관세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소송비용(배상금)은 매년 5,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배상금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자체 전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인건비 등 항목에서 부족분을 전용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금액이 매년 인건비 등 항목에서 이·전용되어 집행되었다.[1)]

그러나 타 항목 예산의 전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해당 항목의 소요액을 가급적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액과 집행액 간의 괴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관세소송비용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

1) 관세청은 소송패소비용 부족을 사유로 2012년 1억 1,500만원, 2013년 4,700만원, 2014년 1억 1,500만원, 2015년 6억 2,200만원을 전용하였다.

[표 1] 2012~2015년 관세청 소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연도별 건수		137	89	103	94
소송금액		136,905	129,128	495,176	111,936
소송결과	승소	53	87	118	73
	패소	10	15	12	18
소송비용(배상금)		**164**	**101**	**164**	**664**
배상금 예산액		**50**	**50**	**50**	**50**
배상금 예산 집행률		328	202	328	1,328

자료 : 관세청

3 밀수단속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필요(조사감시국)

가. 현 황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시 밀수품에 대한 단속과 밀수신고, 밀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밀수단속」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으로 5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50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다.

밀수단속 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 불법거래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관세청 웹사이트 내에 모니터링 민간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사이버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 동 감시단원은 인터넷상에서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5년 126건의 밀수 제보를 하여 99건을 검거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감시단 운영에 대한 2015년 예산은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959만원이 집행되고 41만원이 불용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밀수단속 사업의 사이버감시단 운영예산 편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사이버감시단 운영예산을 사이버감시단 개인별 예산지급 방식이 아닌, '세관조사요원·사이버감시단 합동 워크숍' 개최, '밀수방지 홍보 기념품 제작지원' 비용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세관조사요원 등 합동 워크숍은 효율적인 사이버불법거래 감시방안 논의, 사이버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사이버감시단 활성화 방안 협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워크숍 참가 인원 41명 중 관련 공무원 21명을 제외하면 참가한 사이버감시단원은 20명에 불과하며, 사이버감시단원이 총 176명임을 고려할 때 11.4%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가하는 워크숍으로 감시단원의 불법정보 교환 활성화 및 관심도 제고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사이버 불법근절을 위한 밀수신고 홍보용품 제작 지원의 경우에도 사이버감시단원 운영지원에 특화된 경비로 보이지 않는다. 관세청은 밀수단속 사업에서 밀수신고 홍보 기념품 제작비로 약 5,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사이버 불법근절을 위한 밀수신

고 홍보용품 제작'을 제외한 비용이며, 두 홍보용품 제작에는 큰 차이가 없다. 더불어 밀수방지 홍보문구 및 밀수신고번호를 명기한 해당 기념품이 이미 밀수신고를 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가입한 사이버감시단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거나 성과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1)]

이를 고려할 때, 사이버감시단 운영지원 예산은 사이버감시단 운영에 미치는 효율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사이버감시단 예산집행 현황

(단위: 만원)

	세부 내역	예산액	집행액
사이버감시단 활동 지원	- 조사요원·사이버감시단 합동 워크숍	2,000	787
	- 사이버 불법근절을 위한 밀수신고 홍보용품 제작 지원		1,172
합 계		2,000	1,959

자료: 관세청

1)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당시 사이버감시단 운영비가 워크숍, 기념품, 홈페이지 개선 등의 명목으로 주로 사용되어 예산집행이 부적정함을 지적하면서, "사이버 감시단의 적발 감시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적발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다.

4 국제협력 사업 관리 강화 필요(정보협력국)

가. 현 황

관세청은 급증하는 비관세장벽 등 해외 통관애로의 적시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WTO, WCO, ASEM, APEC 등 국제 관세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으로 26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6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다.

국제협력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국제회의 개최지원 및 참가」, 「국제기구 전문가양성」 등을 수행 중이다.

[표 1] 국제협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제협력	2,657	-	-	2,657	2,656	-	1
- 국제회의 개최지원 및 참가	343	-	-	343	342	-	1
- 국제기구 전문가양성	98	-	-	98	98	-	-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158	-	-	158	158	-	-
- 통관환경보고회 개최 등	93	-	-	93	93	-	-
- 국제부담금	1,965	-	-	1,965	1,965	-	-

자료: 관세청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협력 사업 중 국제기구 전문가양성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전문가양성 사업은 국제 강사 인력 강화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주로 국제회의참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관세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관련 워크숍이나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국제경험을 쌓고 최신 관세행정 동향 입수, 국

제기구 관계자 및 타 회원국 직원과의 관계형성 등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국외출장은 「국제회의 개최지원 및 참가」 및 관세청에서 수행하는 다른 국외출장과의 차별성이 적어 보인다. 현재 관세청은 「관세행정지원」사업으로 WCO 재정위원회, WCO HS검토 소위원회 등의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 지원」, 「정보협력국 기본경비」 등의 사업으로도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회의 참여자 역시 국제기구 전문가로 인증된 사람뿐 아니라 다른 관세청 직원들도 예비 후보라는 이유로 참석하고 있어 다른 회의 참석자와 구별되지 않는다. 동 사업을 통해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국제기구 전문가로 인증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의 사업 내용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참여가 국제 경험을 축적시키는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국제회의 참석과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을 목적에 맞는 성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단기연수 또는 국제기구 전문가로 인증된 관세청 직원을 활용한 내부교육 등 사업 내용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1)]

1) 관세청은 예산과는 별도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전문가 인재양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국제훈련 인증교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훈련 인증교관은 매년 업무 전문지식, 외국어 능력 및 국제 감각 등을 갖춘 직원을 공개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각 관세행정 분야에 37명이 인증교관으로 선발되어 국제기구 회의와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사나 토론자(패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5 면세점 대상 선정 및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검토 필요 (통관지원국)

가. 현 황

관세청은 보세구역 특허, 품목분류사전심사, 통계 및 증명서 등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면허료 및 수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은 39억 3,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인상에 따라 수납액은 50억 4,500만원이다.

면허료 및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이하 "면세점 특허수수료"라 함)는 「관세법」제176조의2에 따라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2015년 39억 1,000만원이 수납되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0.05%,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0.01%를 징수하고 있다.[1)]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및 특허수수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진입 면세점 대상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시내 면세점은 21곳으로 서울 9개, 제주 3개, 부산 2개 및 울산·창원·대전·대구·수원·청주·인천 각각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관세청 등 정부에서는 시내 면세점의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2)] 그러나 2015년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롯데, 신세계, 신라호텔, SK 등 대기업 면세점이 매

---

1)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 일정 요건충족 시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사업자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특허 발급할 예정이다.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2%에 해당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한 것이다. 면세점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신규 진입 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신규진입 면세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컨소시엄 형태의 면세점 활성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시내면세점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동화면세점	2,447	2,090	2,919	3,188
(비중)	6.8	5.1	5.4	5.2
롯데 디에프리테일(주)	1,142	1,269	1,732	2,651
(비중)	3.2	3.1	3.2	4.3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	12,716	14,782	19,763	22,284
(비중)	35.6	36.3	36.7	36.0
롯데월드 면세점	2,910	3,355	4,820	6,112
(비중)	8.1	8.2	8.9	9.9
호텔신라	7,993	8,688	11,521	13,206
(비중)	22.4	21.3	21.4	21.4
SK네트웍스(주) 워커힐 면세점	1,833	1,958	2,747	2,874
(비중)	5.1	4.8	5.1	4.6
롯데 부산면세점	2,444	2,508	2,564	2,935
(비중)	6.8	6.2	4.8	4.7
㈜신세계 조선호텔 면세점	1,339	1,593	1,662	1,891
(비중)	3.7	3.9	3.1	3.1
앙코르면세점	-	0.02	2	4
(비중)	0.0	0.0	0.0	0.0
㈜대동백화점 대동면세점	-	6	20	26
(비중)	0.0	0.0	0.0	0.0
울산 진산면세점	-	8	44	73
(비중)	0.0	0.0	0.1	0.1
㈜그랜드관광호텔 시내면세점	-	9	74	162
(비중)	0.0	0.0	0.1	0.3
신우면세점	-	3	40	51
(비중)	0.0	0.0	0.1	0.1
중원면세점	-	-	6	12
(비중)	0.0	0.0	0.0	0.0
㈜호텔롯데 롯데제주면세점	948	1,469	1,998	2,292
(비중)	2.7	3.6	3.7	3.7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	1,987	3,027	3,983	4,002
(비중)	5.6	7.4	7.4	6.5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엔타스듀티프리 인천본점	-	-	-	56
(비중)	-	-	-	0.1
에이치디씨 신라면세점	-	-	-	10
(비중)	-	-	-	0.0
갤러리아 면세점 63	-	-	-	7
(비중)	-	-	-	0.0
합 계	35,759	40,765	53,895	61,836

주: 음영표시는 중소·중견기업
자료: 관세청

둘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및 부과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수수료 징수액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특허에 대한 발급수수료의 성격과 함께 면세점의 운영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약 40억원의 수수료 징수 규모는 매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징수제도의 합리화와 관련하여 ①특허수수료율 인상, ②특허수수료율의 매출액 구간별 누진제 도입, ③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부담금 부과, ④특허수수료 납부예정액을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경쟁입찰 방식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3]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검토함에 있어서 면세점의 유형, 면세점 사업자의 규모, 면세점별 이익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4]

[표 2] 면세점 매출액 및 특허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매출액	5,371,600	6,329,250	6,832,554	8,307,698	9,198,454
특허수수료	16	16	17	582	3,910

자료: 관세청

3)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5.10.5.

4) 면세점은 크게 시내면세점과 출국장(공항, 항만)면세점으로 구분되는데, 양자간에는 특허 신청, 심사, 승인 과정과 임대료 등 비용 지출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의 초과 이익 발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유형은 주로 시내면세점이다.

조 달 청

Ⅰ 결산 개요

1 현 황

201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은 조달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수입 결산액은 총 3,609억원으로 예산액 3,352억원 대비 7.7% 초과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55억원이다.

[표 1] 조달청 소관 세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A)					
조달특별회계	335,227	335,227	396,456	360,929	35,527	-	107.7
- 손익계정	214,282	214,282	263,736	228,209	35,527	-	106.5
- 자본계정	120,945	120,945	132,720	132,720	-	-	109.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4	4	-	-	-
총 계	335,227	335,227	396,460	360,933	35,527	-	107.7

자료: 조달청

총계 기준 세출·지출 결산액은 총 3,373억원으로 예산현액 3,460억원 대비 97.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억원, 불용액 80억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표 2] 조달청 소관 세출·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조달특별회계	335,227	335,227	345,982	337,339	671	7,972	97.5
- 손익계정	214,282	214,282	215,641	209,535	671	5,435	97.2
- 자본계정	120,945	120,945	130,341	127,804	-	2,537	98.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	-
총 계	335,227	335,227	345,982	337,339	671	7,972	97.5

자료: 조달청

윤나나 예산분석관(nanay@assembly.go.kr, 788-3736)

총지출 기준 조달특별회계 결산액은 1,238억원으로 손익계정 1,041억원, 자본계정 197억원이다.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4 결산 (A)	2015 예산		2015 결산 (B)	증 감	
		본예산	추경예산		B-A	(B-A)/A
조달특별회계	115,728	119,541	119,541	123,820	8,092	7.0
- 손익계정	100,148	106,683	106,683	104,103	3,955	3.9
- 자본계정	15,581	12,858	12,858	19,717	4,137	26.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
총 지 출	115,728	119,541	119,541	123,820	8,092	7.0

자료: 조달청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로부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51억원,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831억원, 회전자금으로 250억원이 각각 이전되었다.

[그림 1]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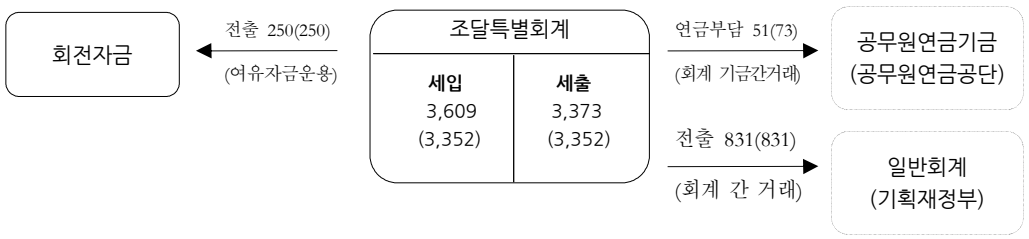

주: 1. 총계기준
2. ( )는 예산수치
자료: 조달청

2 주요 사업체계

2015회계연도 조달청 세출예산은 총 3,352억원이며 1개 분야, 1개 부문, 7개 프로그램, 20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조달청의 분야·부문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달청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조달정보화 등 2개	나라장터운영 등 3개
		조달사업 운영	정부물품 구매지원 등 4개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등 5개
		조달행정지원	인건비 등 10개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15개
		회계간거래	일반회계전출금 1개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개
		계정간거래	타계정전출금 1개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의 전출금 1개
		회계기금간 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1개	공무원연금부담금 1개
		여유자금운용	기타여유자금운용 1개	회전자금전출금 1개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조달청의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없으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회전자금 전출금, ② 나라장터 운영사업** 등이 있다. 회전자금 전출금은 비축물자를 목표재고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1] 나라장터 운영은 사업 내용에 맞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2]

이하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① 회전자금 전출금** 등을 비롯하여 **② 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분석한다.

1) 회전자금 전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2) 나라장터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Ⅱ 개별 사업 분석

1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필요(기획조정관)

가. 현 황

조달청은 지방청의 경상적 경비지출을 위하여 「지방조달행정 기본경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으로 4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00만원과 이·전용 7,000만원에 의해 예산현액은 46억 9,500만원이며, 이 중 45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고, 900만원은 이월, 1억 6,100만원은 불용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에 따라 청사관리용역 계약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근로자 인건비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달청 청사관리용역원의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시급 8,019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9개의 지방조달청 및 조달청 소관의 조달품질원은 2015년 최저임금(5,580원)보다는 높은 임금을 책정하였으나, 모두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하여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계약단가는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또한 조달청의 역할이며, 공공기

1)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며,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11.11.28.)하였고,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관리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2) 청소·경비용역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구) 제조부분 보통인부, 2013년 변경)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관계부처 합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2015. 11., p.14)

관의 용역을 조달·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

따라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표 1] 2015년 조달청 청소용역 계약현황

(단위: 원, 명, 시간, %)

기관명	청소용역 계약서 상 총 계약금액	청소용역 인원	월 평균 근무시간	시중노임단가 (시급)	기관노임단가 (시급)	시중노임단가 대비 지급률
충북지방조달청	21,755,000	1	209	8,019	6,138	77
전북지방조달청	29,628,000	1	209	8,019	5,900	74
경남지방조달청	26,391,000	1	175	8,019	5,878	73
부산지방조달청	60,728,000	2	209	8,019	7,890	98
인천지방조달청	70,975,000	2	209	8,019	6,838	85
강원지방조달청	19,140,000	1	125	8,019	5,949	74
서울지방조달청	321,705,000	12	209	8,019	6,742	84
대구지방조달청	26,642,000	1	209	8,019	6,459	81
대전지방조달청	31,602,000	1	209	8,019	7,595	95
조달품질원	172,916,000	7	209	8,019	5,580	70

자료: 조달청

2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한 비축물자 확보 방안 필요(국제물자국)

가. 현 황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다.[1] 2015년 12월 말 회전자금의 보유 규모는 1조 2,931억원으로 정부출연금 1,082억 원과 이익잉여금 1조 1,849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회전자금은 수요물자사업자금과 비축물자사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보유형태는 비축원자재 재고, 외상매출금 및 현금 등이다.

[표 1] 연도별 회전자금 규모

(단위: 억원)

사 업 별	2012	2013	2014	2015
수요물자(A)	2,076	2,076	2,076	2,076
비축물자(B)	10,063	10,494	10,605	10,855
합 계(C=A+B)	12,139	12,570	12,681	12,931

자료: 조달청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달청은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2014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으로 "2014년 12월 기준,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등 비철금속과 인듐, 리튬, 스트론튬 등 희소금속의 재고가 목표재고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스트론튬의 경우 안전재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2015년 12월 기준으로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목표재고에 못 미치는 재고량으로 지적된 금속 중 목표재고량의 변경에 따라 아연, 니켈은 목표재고량을 달성하였으나, 알루미늄, 구리, 납, 주석, 인듐, 리튬, 스트론튬은

1)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표재고량이 증가됨에 따라 여전히 목표재고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었으며, 향후 추가로 원자재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비축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비하여 원자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이를 이용하는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표재고 수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비축물자 확보 사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원자재 비축목표량 및 재고일수 현황

(단위: 일, 톤)

품목	목표재고일수			재고량 ('15년 말)	목표재고량		재고일수		
	안전	운영	적정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증감
알루미늄	**25**	**25**	**50**	**117,996**	**129,337**	**136,351**	**38.1**	**45.2**	**7.1**
구리	**35**	**35**	**70**	**53,965**	**62,529**	**57,464**	**62.1**	**66.9**	**4.8**
납	**20**	**15**	**35**	**14,003**	**14,011**	**15,563**	**32.0**	**33.1**	**1.1**
아연	35	30	65	13,692	15,385	13,431	51.3	58.6	7.3
주석	35	40	75	3,272	3,442	3,256	65.2	75.0	9.8
니켈	30	35	65	4,451	3,906	3,269	67.0	80.7	13.7
비철금속계	-	-	60	207,379	228,610	229,334	52.6	59.9	7.3
페로실리콘	15	15	30	20,280	14,671	10,758	41.5	41.5	-
코발트	35	35	70	164	123	149	93.3	93.3	-
바나듐	35	30	65	1,410	1,029	903	89.1	89.1	-
인듐	**35**	**40**	**75**	**10**	**17**	**23**	**41.9**	**31.0**	**-10.9**
리튬	**20**	**35**	**55**	**640**	**1,241**	**1,332**	**28.4**	**26.4**	**-2.0**
스트론튬	**25**	**25**	**50**	**99**	**805**	**1,030**	**6.1**	**6.1**	**-**
망간	-	-	-	9,733	-	-	-	-	-
비스무스	-	-	-	68	-	-	-	-	-
탄탈럼	-	-	-	1	-	-	-	-	-
희소금속계	-	-	60	32,405	17,886	14,195	50.2	48.2	-2.0
전체	-	-	60	239,784	246,496	243,529	51.4	54.1	2.7

자료: 조달청

3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 방식 개선 필요(시설사업국)

가. 현 황

조달청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대해 설계금액·설계도서 등의 적정성을 사전검토하고,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기획·설계·공사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예산현액은 26억 4,400만으로, 이 중 22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2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은 일반수용비 편성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미흡하였다.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원, 공공 공사관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예산액은 6억 6,200만원이나 이 중 4억 4,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에 대해서 조달청은 ① 총사업비 관리지원의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수당 절감 노력에 따라 예산이 일부 불용되었으며, ② 공공 공사관리의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와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디자인 자문위원 수당이 불용되었고, ③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경우 수요 예측한 건수보다 실제 심사 건수가 적어서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① 총사업비 관리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계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수당 절감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불용은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자문에 대한 실적(1,200만원)이 없고, 자문위원들의 현장답사 출장비가 미사용(5,500만원) 되었기 때문이다.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자문 실적이 전무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문위원들의 현장답사 비용은 과도하게 사업계획에 포함했다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② 공공 공사관리의 디자인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의 경우 설계검토라는 기존의 업무와 디자인 자문위원의 업무 유사성에 대한 파악이 늦어 별도 운영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③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경우에도 최저가심사기준의 개정에

따라 계량적 평가의 확대로 심사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2013년은 15건, 2014년에는 1건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2014년에도 1억 600만원의 예산 중 집행된 금액이 200만원에 불과함에도 2015년 수요를 10건으로 예측하고 수용비를 편성하여 대부분이 불용되었다.

이와 같이 예산 편성 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흡함이 보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일반수용비 2015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총사업비 관리 지원	450,213	316,629	133,584	29.7
공공 공사관리	162,730	126,071	36,659	22.5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49,000	5,800	43,200	88.2
합 계	661,943	448,500	213,443	32.2

통 계 청

Ⅰ 결산 개요

1 현 황

2015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 결산액은 총 51억원으로 예산액 43억 1,100만원 대비 18.3% 초과수납 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1억 2,700만원이다.

[표 1] 통계청 소관 세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A)					
일반회계	4,311	4,311	5,100	4,973	127	-	118.5

자료: 통계청

2015년도 통계청 세출예산액은 3,872억 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수입대체초과지출 승인 금액 5억 5,400만원이 증가한 3,877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07억 3,700만원이다.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 170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다.

[표 2] 통계청 소관 세출·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예산					
일반회계	387,209	387,209	387,763	370,737	-	17,026	95.6

자료: 통계청

윤나나 예산분석관(nanay@assembly.go.kr, 788-3736)

2 주요 사업체계

2015회계연도 통계청 세출예산은 총 3,872억 900만원이며 1개 분야, 1개 부문, 5개 프로그램, 22개 단위사업, 7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통계청의 분야·부문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통계청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통계전문교육 등 2개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89억원) 등 5개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정보화 등 2개	S-GIS DB구축(67억원) 등 5개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인구주택총조사 등 8개	인구주택총조사(1,061억원) 등 11개
		성과중심 책임운영기관운영	경인지방통계청 등 6개	경인인건비(202억원) 등 35개
		통계행정지원	본부 인건비 등 4개	본부인건비(409억원) 등 17개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통계청의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등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사회연구센터 운영 예산 중 서머세미나 개최비용의 과다 계상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① 농림어업총조사, ② 정보시스템 관리사업** 등이 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등록센서스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1] 정보시스템관리는 국가통계 개방이용 확산대회의 사업내용과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2]

이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① 인구주택총조사 사업**등을 비롯하여 **② 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분석한다.

1) 농림어업총조사 :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2) 정보시스템관리: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10.

II 주요 현안 분석

1 통계조사작성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공통)

가. 현 황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총 58종으로 조사통계 41종, 가공통계 15종, 보고통계 2종이다. 2015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경제총조사가 시행 중이다.

[표 1] 통계청 주요 통계조사 작성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4 결산	2015			201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A)		
통계정보 확충 및 서비스 체계 개선			16,902	21,856	21,856	21,378	20,776
	통계자료관리		538	875	875	845	875
	통계정보화		16,363	20,981	20,981	20,534	19,901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69,848	176,005	176,005	164,486	132,030
	경제통계작성		9,427	11,667	11,667	11,202	3,375
		경제구조통계작성	8,923	10,697	10,697	10,289	2,500
		경제동향작성	504	970	970	913	875
	사회농어업통계작성		14,639	13,740	13,740	13,221	14,686
		생활시간조사[1)]	1,713	0	0	0	0
		사회통계작성	10,776	11,333	11,333	10,929	12,501
		농어업통계작성	2,150	2,407	2,407	2,292	2,185
	경제총조사		829	2,382	2,382	2,252	60,960
		경제총조사	829	2,382	2,382	2,252	60,960
	인구주택총조사		25,019	106,124	106,124	97,246	10,236
		인구주택총조사	25,019	106,124	106,124	97,246	10,236
	농림어업총조사		1,269	20,699	20,699	19,674	1,987
		농림어업총조사	1,269	20,699	20,699	19,674	1,987

주: 1) 2015년 과목구조 개편으로 사회통계작성사업(3032-304)과 통합
자료: 통계청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통계청은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터넷조사 활성화에 따른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수행하면서 전수조사방식이 아닌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20% 표본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면서 인터넷조사를 활용하였다. 인터넷조사의 경우 대면 조사와 비교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문지에 대한 이해가 대면조사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며 신뢰도 저하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항목의 경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설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현재 통계청은 경제총조사에서도 인터넷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조사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신뢰도 높은 인터넷조사를 위해 대면조사와는 다른 형식의 설문지 개발과 불편사항을 수렴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계조사 결과 및 활용에서 국민의 체감도와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통계청이 「경제동향작성」사업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생활물가지수 개발 및 가중치 개편주기 단축의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현실에서 체감하는 물가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사이에 괴리감을 느낀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다.[1)]

그리고 「통계정보화」사업의 일환인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생활업종 통계지도"의 경우 상세 지표를 통한 업종 선택으로 창업지역을 분석해 주는 '창업지역 검색'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전국사업체 조사의 내용이 2014년 조사내용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현실과 다르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2)] 이는 통계청의 통계조사 실시 시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 KBS 9시뉴스 이슈&토크, 2016. 6. 13., "공식물가 1.1% 오를 때 체감물가는 2.7% 상승", 동아일보, 2016. 5. 26

2) "'통계청 생활업종 통계지도' 유명무실… 옛날 자료로 성공창업?", 경기일보, 2016. 4. 19.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통계조사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체감도와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현실 반영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역 분석의 경우 지역의 최신정보가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통계와의 연계 활성화 등의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하는 수입대체경비 시정 필요(운영지원과)

가. 현 황

통계청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제53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계교육원 수입 등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수입을 직접 동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2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5억 1,700만원이다.

[표 1] 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예산액 (A)	수납액 (B)	초과수납 (B-A)	예산액 (C)	수납액 (D)	초과수납 (D-C)	예산액 (E)	수납액 (F)	초과수납 (F-E)
수입대체경비	**2,280**	**2,142**	**-138**	**1,836**	**2,268**	**432**	**2,879**	**3,517**	**638**
- 통계교육원	380	632	252	380	597	217	380	481	101
- 통계생산대행	1,500	810	-690	1,000	1,092	92	2,100	2,182	82
- 통계개발대행	48	46	-2	48	70	22	48	48	0
- 지역통계생산대행	352	654	302	408	509	101	351	805	454

자료: 통계청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통계청의 수입대체경비는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수입대체경비 중 초과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항목은 통계교육원 수입과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입이다.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통계교육원 수입의 경우 교육과정, 인원 실적 및 시설 임대수입의 증가추세가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되고 있고,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입의 경우 부처 예산안 편성 시기인 5월에 실시한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1]함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요가 예산안에 미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교육원 수입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통계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의 계획 대비 달성률은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5년 교육인원의 계획 대비 달성률은 146.9%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통계생산대행의 경우 매년 초과수입으로 인한 초과지출 승인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2010~2015년 통계교육원 교육과정, 인원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개, 명, %)

	과정 기준			인원 기준		
	계획	실적	계획대비 달성률	계획인원	실시 인원	계획 대비 달성률
2010	96	143	149.0	11,390	16,278	142.9
2011	113	157	138.9	12,145	21,629	178.1
2012	115	161	140.0	13,530	26,219	193.8
2013	124	178	143.5	14,430	37,580	260.4
2014	141	140	99.3	21,135	31,276	148.0
2015	132	144	109.0	31,095	45,688	146.9

자료: 통계청

1)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 및 지역통계생산대행의 수요조사를 중기 예산편성 시기(2월), 익년도 예산편성 시기(5월), 부처 예산안 국회 상임위 상정 및 연간업무계획 수립 시기(10월)에 실시하고 있다.

[표 3] 지방 통계청 2015년 초과지출승인액의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초과 지출 승인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초과지출승인액의 비목별 집행액					
							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기타
지역 통계	경인청	**20**	93	**113**	113	-	93	11	72	4	4	2
	동북청	**57**	75	**132**	131	1	75	11	58	4	1	1
	호남청	**70**	291	**361**	360	1	291	18	249	20	4	-
	동남청	**54**	11	**65**	65	-	11	6	-	1	1	3
	충청청	**150**	-	**150**	124	26	-	-	-	-	-	-
총 합 계		**351**	470	**821**	793	28	470	46	379	29	10	6

주: 기타는 보상적 경비와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를 포함

자료: 통계청

2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통계교육원)

가. 현 황

통계청은 국가 및 민간기관의 통계작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으로 1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7억 1,400만원이 집행되고 5,600만원이 불용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통계캠프·통계아카데미·교사 연수과정·연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빅데이터, 행정자료활용 등 최근 통계트렌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통계 전문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해', '리더십 개발과정', '갈등관리과정'등과 같은 일반소양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면서, 최근 통계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에 필요한 빅데이터, 행정자료활용 등 관련 교육이 다소 부족하다. 향후에는 빅데이터, 행정자료 활용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통계전문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어야 하는 CCTV구입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였다.

통계교육원은 통계교육원 도서관 CCTV설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69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는 자산취득비에 해당한다. CCTV는 그 내구 연수가 9년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이므로 자산취득비(430목)로 집행하여야 한다.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심 의 I 김광묵 예산분석실장
윤용중 예산분석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문종열 사회예산분석과장
박동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은정 법안비용추계1과장
장태성 법안비용추계2과장
이선주 법안비용추계3과장

작 성 I 심지헌 예산분석관
윤나나 예산분석관

지 원 I 정진아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6년 7월 8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914-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